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 2021-0019

인천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 수련활동 등)

운영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핵심 내용 요약 06
-  현장체험학습 유형별 실시 사항 09

I |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1. 현장체험학습의 목적 13
2. 현장체험학습의 구분 13
3. 현장체험학습 운영 규정 14
4.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향 14
5. 유형별 현장체험학습 15
6.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18

II | 현장체험학습 계획하기

1. 기본 계획 수립 23
2.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28
3.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운영 29
4. 현장답사 30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32
6. 계약 담당자 확인 및 계약 33
7. 경비 책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4

III |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1. 계약의 이해 37
2. 계약 방법별 진행 절차 41
3. 계약업체별 구비서류 및 계약 시 유의사항 53

CONTENTS

IV

현장체험학습 운영하기

1. 현장체험학습 사전준비	61
2. 단체차량 이용 사전 점검	62
3. 단체차량 이용 당일 점검	63
4.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교육	64
5.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66
6. 경비 집행	67
7. 정산	68

V

현장체험학습 평가 및 사후 조치

1. 사후 평가 및 결과 활용	71
2. 평가 결과 공개	71



부록

【부록1】 현장체험학습 관련 필수 연수 내용	75
【부록2】 계약 · 정산 관련 감사 적발 사례	77
【부록3】 현장체험학습 지도점검 개선사항	79
【부록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85
【부록5】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관련 법규	87
【부록6】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99
【부록7】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안내	100
【부록8】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안내	106
【부록9】 단체차량 이동 시 대형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108
【부록10】 현장체험학습 관련 Q&A	109
【부록11】 안전사고 예방 길라잡이	113



참고서식



인천교육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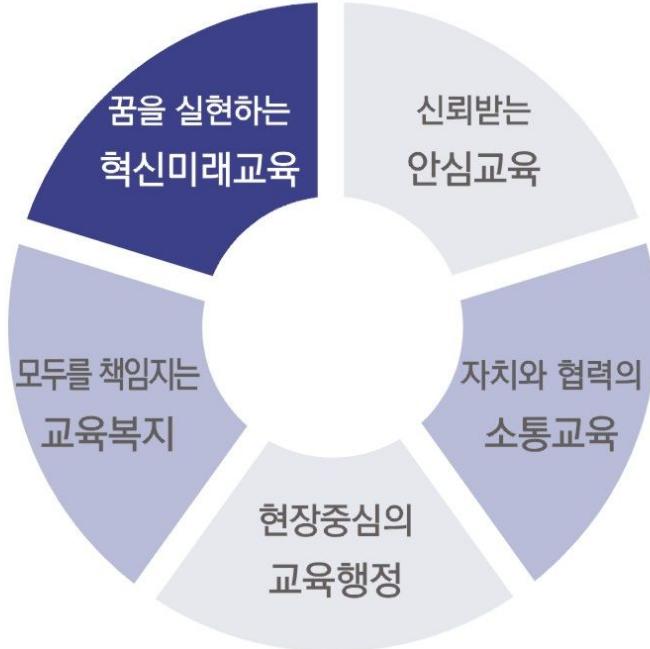
▶ 교육비전

꿈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 교육지표



▶ 주요정책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목 적

1.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2. 현장체험학습 시 ‘권장사항’, ‘의무사항’, ‘금지사항’ 준수
3. 현장체험학습 관련 제반 업무의 투명성 제고
4. 장학활동 및 감사기준 제시
5. 학교장의 재량권 제고를 통한 현장체험학습의 확대
6.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지침의 효력

이 지침 시행 이전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각종 규제 및 기준이
이 지침과 상충될 경우 이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

2021. 3. 1.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핵심 내용 요약

1. 현장체험학습의 구분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
2. 현장체험학습 실행 규모에 따른 구분
 - 소규모: 100명 미만, 중규모: 100명 이상~150명 미만, 대규모: 150명 이상
3. 현장체험학습 실행
 - 소규모, 테마형, 학생참여형 운영 지향
※ 단, 안전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중·대규모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모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4. 안전요원
 - 대규모 시행일 경우 학생 50명당 1인 의무 배치
5. 인솔자
 -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교감, 교사, 행정요원, 학부모 등 학급당 2명 배치 권장(계획서에 명시)
6. 현장답사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기타), 1일형 현장체험학습 모두
 - 필수 확인사항 : 시설 및 화재관련 안전성, 급식장소 및 식단, 식자재 안전성 점검 및 확인
 - 숙박형은 계약 전과 실시 전 2회 실시하되, 다음은 1회 실시 가능
※ 1회 실시 규정: 교육청직속시설, MAS구매, 지자체 안심서비스 이용, 100명 미만, 최종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는 경우
 -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1회 실시하나, 안전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 하에 생략 가능
 -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학부모 위원과의 동반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학교와 학부모의 여건에 따라 교직원으로만 현장답사 가능
7. 수학여행 안전자원단 활용
 - 대규모 운영의 경우 점검 및 컨설팅 (안전 및 교육적 효과성 검토)
8.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 수학여행, 수련활동에 한함.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 개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는 모든 현장체험학습에 해당
9. 현장학습공개방 운영
 - 대상 :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학습(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제외)
 - 기존 매뉴얼 상의 필수 공개항목 공개
※ 사후등록(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 조사 결과(학생, 학부모)
10. 학부모 동의율
 - 수학여행 대규모 80%, 중·소규모 70% 이상
※ 수련활동 등 숙박형 체험학습은 규모와 관계없이 70% 이상
11. 동일 시설을 2년 이상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전년도 만족도조사 결과가 보통 이상이 70% 이상인 근거 필요
12. 운영 공통 준수사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인증 프로그램 이용
 - 인솔자의 임장지도 의무 및 무단이탈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사례 절대 금지
 - 영업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실시
 - 책임인솔자 지정으로 신속한 보고 체계 수립

순	추진내용	수학 여행	수련 활동	일일 체험	비고	참고 폐지
1	기본운영계획 수립	✓	✓	✓	① 소규모 수학여행·수련활동 지향(100명 미만) ② 대규모 150명 이상 시 50명당 1인 안전요원 확보	23p
2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	✓		① 대규모(국외) 80%, 중소규모 70% 이상 동의 ② 수련활동은 규모 상관없이 70% 이상 동의	28p
3	『수학여행 ·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운영	✓	✓		① 위원장 외 10 명 이하, 학부모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학생 참여 가능) - 기금적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함 ② 시기, 장소, 프로그램, 경비, 계약방식 등 협의 ③ 위원회 개최 횟수는 1회 이상(2회 이상 권장) ④ 위원구성 및 임기 운영방법은 내규에 따름	29p
4	현장답사 (계약 전)	✓	✓		① 학부모, 활성화위원 참가 권장 ② 이용 시설의 허가·등록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www.youthnet.or.kr) ③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적정'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 이용,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활동 진흥원 등의 '인증' 여부 확인 ※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 1일형 현장체험학습 : 1일 3시간 이상 또는 1일 1시간 이상 총 3시간 이상 운영 시 인증 여부 확인 ④ 실시경로·예정지와 활동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 부합 여부 ⑤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인원 및 안전·위생상태 ⑥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⑦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 사고 다발지역 등 ⑧ 해양 수상 활동 사전 확인 -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등록 업체 여부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 가이드의 적정 배치 여부 - 교육 시 활용할 수상레저기구 등의 등록 여부 ⑨ 체크리스트 활용 및 보관 철저 ⑩ 답사 경로, 행사장소와 날짜가 나오게 사진 촬영	30p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	✓	① 일정, 장소, 경비, 안전계획, 계약 방법 등 ② 1인당 경비가 심의(자문)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32p
6	실시계획 수립 및 학교장 결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존중	✓	✓	✓	① 잔류 학생 별도 계획 ※ 경제사정 불참자 최소화 및 미참가 학생 지도계획 수립 ② 운송 및 각종 안전사고, 성범죄예방 안전교육 수립 - 수학여행수련활동 계획 시 24시간 학생 관리하도록 생활지도 계획 포함 - 버스당 2인 이상 인솔자 탑승 권장	16p, 24p, 61p

순	추진내용	수학여행	수련활동	일일체험	비고	참고페이지
7	수학여행 안전지원단 활용	✓			① 대규모 수학여행 운영 시 수학여행 안전지원단 점검 및 컨설팅 (대규모 운영에 따른 안전 및 교육적 효과성 검토)	별도 안내
8	계약	✓	✓	✓	① 1인 견적 제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② 2인 이상 견적 제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③ 입찰(일반·2단계 등):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④ 추정가격에 운송업체, 숙박업체, 입장료 등은 따로 계산됨(직영일 경우) ⑤ 안전보호 조항, 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책임 소재, 책임 범위 명시 ⑥ 계약상대자는 대표자(불법중간알선업자 금지) ⑦ 구비서류가 많으므로 매뉴얼 필수 참고 ⑧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안전 교육 실시 명시 ⑨ 수학여행·수련활동 관련 여비 지급 규정 준수 ⑩ 계약 시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 수시 음주 감지 관련사항 명시	37p
9	현장답사 (실시 직전)	✓	✓	✓	① 계약 전 현장답사와 동일하지만, 실제 프로그램 운영을 가정하여 답사하는 것을 추천 ② 실제 업무담당자 또는 인솔자 중심으로 답사 실시 ③ 매뉴얼 예외 규정에 의거 실시 생략 가능	31p
10	사전 안전교육	✓	✓	✓	① 학생 대상 사전 안전지도 ② 성희롱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③ 재난안전 정보 포털앱(안전디딤돌) 안내	61p
11	운영	✓	✓	✓	① 현장 입장지도 철저(학교계획에 의한 사제동행 등) ② 운전자 수시 음주감지 실시 ③ 숙소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상황발생시 행동요령 안내 ④ 사안 발생 시 보고체계 매뉴얼 숙지 및 준수 (학교→교육지원청→시교육청→교육부) ⑤ 잔류 학생 관리 지도	64p
12	경비 집행 및 정산	✓	✓	✓	① 정산 내역 학교홈페이지 텁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② 잔액 발생 시 환불	67p
13	만족도 조사 실시	✓	✓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71p
14	운영 결과 탑재 (현장학습공개방)	✓	✓		①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탑재 ② 학생 1인당 경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반드시 포함	71p



현장체험학습 유형별 실시 사항

구분	유형	숙박형					비숙박형	
		수학여행				수련 활동	기타 숙박형 현장체험 학습	
		소규모 (100명 미만)	중규모 (100명~1 49명)	대규모 (150명 이상)	국외 (규모 무관)			
1	계획 수립 (학교교육계획서 반영)	○	○	○	○	○	○	○
2	학부모 동의	○	○	○	○	○	○	○
2	여부 비율	70% 이상		80% 이상		70% 이상		학교자율
3	학생 선호도 조사	○	○	○	○	○	학교자율	학교자율
4	안전요원 배치 여부	배치 권장	1명 이상 의무 배치	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			배치 권장	
5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	○	○	○	○	학교자율	○
6	현장 답사	1회	2회	1회 이상		2회		1회
6			1회 현장답사 가능 요건 해당 시 1회 가능	학교장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1회 현장답사 가능 요건 해당 시 1회 가능		현장답사 가능 요건 해당 시 1회 가능	
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	○	○	○	○	○
8	사전 안전교육	○	○	○	○	○	○	○
9	잔류(불참) 학생 지도 계획	○	○	○	○	○	○	○
10	사전 컨설팅	필요 시		의무			학교자율	
11	컨설팅 신청서 제출	학교자율		실시 30일 전			학교자율	
12	사후결과공개 (답재)	○	○	○	○	○	○	학교자율

※ 학교자율 : 학교장이 판단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

I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I

현장체험학습의 이해

1

현장체험학습의 목적

- 가.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 한다.
- 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밖 단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 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2

현장체험학습의 구분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

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 ① 수학여행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자연, 문화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단체 숙박형 여행
- ② 수련활동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는 단체활동
- ③ 기 타 :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제외한 활동으로, 일정 기간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나. 1일형 현장체험학습

하루에 이루어지는 단순 관광, 관람, 견학, 강의 등 비숙박 체험활동
※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체험활동의 경우 진로체험 매뉴얼을 참고하여 운영

3 현장체험학습 운영 규정

가.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3조(교육과정 등)

-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 방법 등)

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라.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사.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제351호)

4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향

가.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한다.

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의 국내·외 수학여행·수련활동은 금지한다.

다.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계획 및 운영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라. 현장체험학습의 시기, 장소,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현장학습 공개방에 탑재·공개하여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마. 장학 활동, 감사, 각종 사안 처리 시 본 안내 사항에 기초하여 기준을 설정한다.

바.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적인 면을 강조하는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지향한다.

5

유형별 현장체험학습

가. 현장체험학습 공통 준수사항

- 1) 현장 답사를 통해 시설 안전을 확인한다.
- 2) 숙박시설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를 해당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다.
- 3) 수학여행·수련활동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을 참고하여 <계약연기 및 취소 등 변경 요건>에 관한 사항을 특수조건에 포함한다.
- 4)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영업배상보험, 청소년활동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에서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5) 체험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 위탁 시 운영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명시한다.

※ 학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사가 인솔지도하는 경우 직영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인증 없이도 운영 가능하나, 반드시 학교장 책임하에 학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 1일 3시간 이상 또는 1일 1시간 이상으로 총 3시간 이상 운영되는 경우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여부를 확인(www.youth.go.kr)한다.

※ 활동 참여 학생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군 활동은 의무적으로 확인 (수상·항공·산악·장기지도보·화학물질 사용·위험기구 사용 활동 등)

나. 수학여행

- 1) 교육과정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학생이 주도(참여)하는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지향한다.

※ 동일프로그램 참여 학생 인원을 기준으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한다.
- 2) 대규모 수학여행(학생 150명 이상)은 학생·학부모 동의 절차, 안전요원 확보, 안전 대책 및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교육청 등에서의 점검 및 컨설팅 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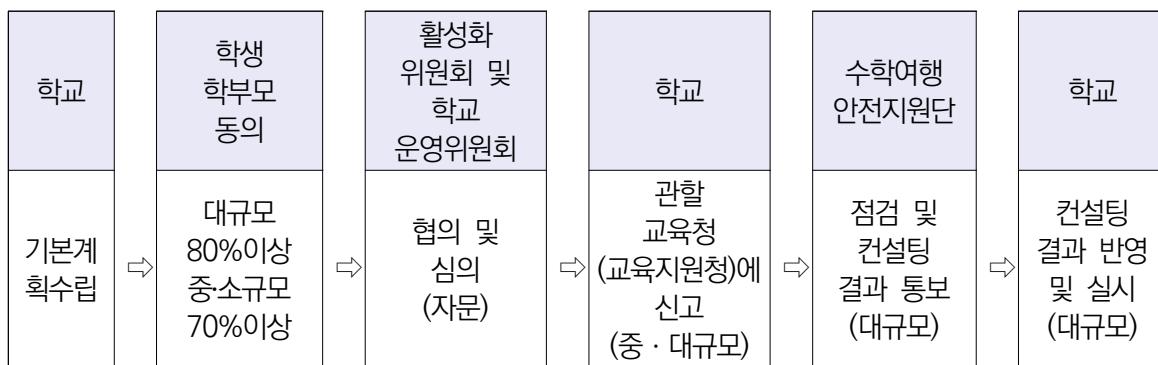
서식12

| 대규모 수학여행운영 기준

- ▶ 학생·학부모 동의 비율 : 80% 이상
- ▶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확보 여부(50명당 1명 이상)
- ▶ 시교육청 수학여행안전지원단 등에서 점검 및 컨설팅 실시 여부
 - 대규모 운영에 따른 안전 대책 및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성 검토

- 3) 참가 학생 100~149명(중규모)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실시하고, 100명 미만(소규모)은 안전 대책을 강화 후 자율적 운영

서식11



※ 「수학여행 ·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의 경우 학교장 재량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할 수 있다.

- 4) 수학여행 추진 시 경제적 부담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 대책 마련 및 미참가 학생에 대한 지도계획을 수립한다.
 - 5) 학생 및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수학여행(동학년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 과다경비 부담 등)은 지양한다.
 - 6) 국내 수학여행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수학여행을 가급적 자제한다.
 - 7) 부득이 국외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현지 특성에 맞는 안전 대책 수립
 - 국외 수학여행 추진 시 적정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 계획 단계에서 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수학여행안전지원단의 점검 및 컨설팅 후 실시
 - 현지 대사관(영사관, 여행사 등) 등 협력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 (영사콜센터)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영사콜센터로 전화하면, 24시간 연중무휴 상담 서비스 제공
- ※ 국내 02-3210-0404, 해외(유료) +822-3210-0404, 해외(무료) +800-2100-0404
 구체적인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참고
- (여행경보제도)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해외여행객에게 단계별 행동요령 안내 서비스 제공
- ※ 남색(여행유의)·황색(여행자제)·흑색(여행금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또는 해외안전여행 앱 참고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별 여행경보제도, 여행자 사전등록제 '동행' 등 국가별 안전 공지사항 서비스 활용

다. 수련활동

- 1) 수련활동은 허가등록된 수련시설 및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 국·공립시설에서 실시한다.
- ※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 국·공립시설이 아닌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에 근거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실시한다. 일반 시설(콘도, 리조트, 펜션, 민박, 영어마을, 체험마을 등)에서의 수련활동은 불가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 나. 청소년수련원
- 다. 청소년문화의 집
- 라. 청소년특화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 바. 유스호스텔

- 2) 수련활동의 목적, 적정 이동 거리,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수련시설을 결정한다.
- 3)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 이상, 종합안전점검 '적합' 결과를 받은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
 - ※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 확인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 4) 특히 숙박을 하거나, 대규모(150명 이상), 고위험 활동(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화학물질 사용·위험기구사용 활동 등)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5조에 의해 국가(청소년수련활동인증 위원회)에서 인증 받은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한다.
 -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프로그램 신고 · 인증 여부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종합평가 결과 5등급 : 최우수 - 우수 - 적정 - 미흡 - 매우 미흡

■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점검 의무사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 정기적인 안전점검(소방, 전기, 가스, 수질, 전반시설 등)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매월 공문서로 보고
- 직원의 내 · 외부 안전 교육(소방 및 방화관리, 응급처치관리, 위생관리 등)은 연 4회 이상 실시
- 직원 대상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확인 제외 대상 프로그램

- 일회성 단순 체험(관광, 관람, 견학, 강의, 참가 등), 이벤트, 단순 기능 · 기법 · 기술을 체득하는 경우(소방훈련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창립되고 담당부처가 분명한 6개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 ※ 청소년적십자(RCY), 4-H본부, 걸스카우트연맹, 스카우트연맹, 청소년연맹, 해양청소년단연맹
- 주 참가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청소년 나이 만9세~24세)
- 활동 실제 참가시간이 1일 3시간 미만 또는 1일 2시간씩 2회 미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 환경부,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
-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태권도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농어촌인성학교) 또는 연수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통일교육원, 인재개발원, 연수원 등)
- 교육청(소속기관, 부속시설 포함) 및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6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

- 가. 안전요원은 수학여행단에 동행하고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 생활 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업무 수행
- 나. 대규모(학생 150명 이상)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배치
- 중규모는 안전요원 1명 이상 배치하고, 소규모는 인력 확보 등을 고려하여 1명 이상 배치 적극 권장
 - 주 · 야간 시간 중 안전요원 배치기준(학생 50명당 1인 이상) 동일
- 다.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여행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 요원 관련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 하여 배치 요구
- 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구직란, 크레존(www.crezone.net), 워크넷(www.work.go.kr) 등을 활용하여 안전요원 확보
- ※ 계약 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 라. 인솔자, 학생 등과 안전요원 간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회 및 교육 실시
- 마. 안전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배치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소정의 안전교육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 교육청이 운영하거나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과정'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

- ▶ 연수운영(위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http://www.redcross.or.kr>)
- ▶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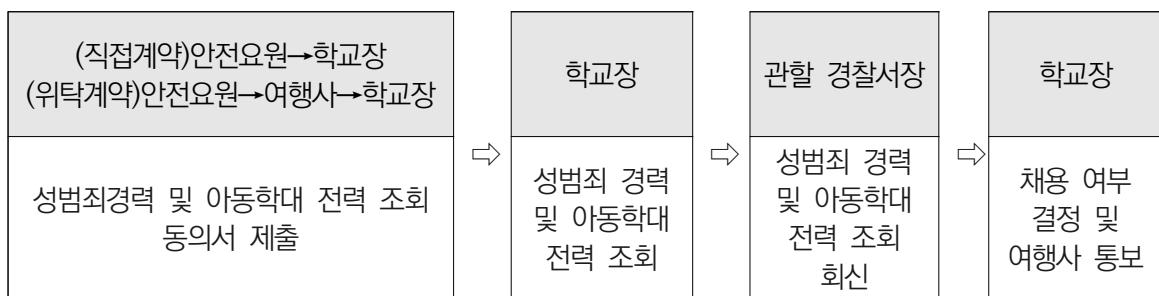
과정 구분	기본과정	보수과정
이수시간	12시간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유형별 응급처치법 /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기교육(10시간) · 수상, 산악 등 레저 활동별 안전수칙 교육(1시간) · 재난유형별 대처 및 예방법 교육(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보건법에 의해 매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대체하여 별도 시행하지 않음 · 2016년도 이수자부터 적용

▶ 교육신청

- 강좌개설 안내(공문시행)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신청
- * 현직 교직원에 한해 기본과정을 기준 1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학생이해교육 생략), 보수 과정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매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대체하여 별도 시행하지 않음
- * 기본과정을 이수하고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할 경우 안전요원 자격 유지
- ※ 단, 당해 연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안전요원 자격 상실

바. 계약 시 자격증이 제출된 안전요원과 실제 현장 배치된 안전요원의 신분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사.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 여행업체에서 채용하더라도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 경력·전력 조회 가능

※ 수학여행·수련활동 시 학교자체 안전요원을 활용할 경우 : 비담임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 요원 교육 이수자(교감, 담임 제외)

Ⅱ

현장체험학습 계획하기



II

현장체험학습 계획하기

1

기본 계획 수립

- 가. 학교교육과정 계획서에 수학여행·수련활동의 대상, 기간 등을 명시한다.
- 학교교육과정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기본 결재를 받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음
- 나. 수학여행·수련활동 계획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정해진 활동의 목적, 테마, 지역, 운송, 숙박, 식사, 프로그램, 학생별 역할 분담 등
※ 활동 장소를 먼저 결정하고 추진하는 형태 지양(의견 수렴 후 장소 결정)
 - 수학여행·수련활동 관계자에 대한 청렴 교육 계획 포함
 - 여행, 숙박, 운송 등 관련 업체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금품, 향응, 편의(교통, 숙박 등)를 제공 받는 행위 금지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 준수

- 학교의 교직원이 수학여행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등으로부터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됨.
- '팸투어'의 경우에 교통이나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1항 6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로 '향응'에 해당됨.
* 팸투어(Fam Tour) : 자자체나 항공사 등이 관광상품 마케팅, 특정관광단지 홍보를 위해 관련자, 유관인사 등을 초청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것

- 활동 장소 및 기간이 특정 지역과 시기(4~6월, 9~10월)에 편중되는 경우, 대규모 버스 행렬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및 대형사고 등 안전사고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를 유념하여 계획 수립·시행
- 주제별·소집단 중심의 수학여행·수련활동으로 운영
- 지나친 흥미와 소비 위주, 관광 일변도의 활동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다. 교육활동의 성격에 따라 관련 서비스 운영 기관을 적극 활용한다.

- 한국관광공사 및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r 등), 각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안심서비스, 인센티브제도 등)

라. 수학여행·수련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련 부서(학년부, 교무부, 학생안전부, 행정실)의 협조를 받아 수립한다.

마. 학교교육과정계획서에 반영된 수학여행·수련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초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고려)

바. 교육장소 및 시설, 차량이동, 교육프로그램 등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생활지도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학교장 임무

- 학교장은 차량 수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 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며, 차량이동과 관련하여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경비교통과로 안전 호송 및 음주 측정을 요청할 수 있음

〈근거 : 교육인적자원부 학생정책과-2116(2005. 3. 30.), 대형버스 5대 이상 이동 시 학교장이 경찰에게 사전에 차량보호 요청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개인 비상약 준비 등에 대한 사전 연수를 실시
- 태풍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학생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 일정 조정 등으로 학생의 안전 확보
- 사안 발생 시 대응체계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수학여행 버스 당 2명 이상의 인솔교사 배치 권장 및 인솔자별 역할 명시

○ 인솔자의 임무

- 인솔자는 참가 학생들에게 사전 생활지도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수학여행·수련활동 계획서에 반드시 반영

○ 대중교통 및 다중 이용시설 사용 시 학생지도 사항

-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직장인들의 출근시간과 겹쳐 일부 구간에서는 극심한 혼잡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으므로,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혼잡 시간 피하기
- 대중교통을 이용한 학생이동 시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질서 지도와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에 대중교통 및 다중 이용시설(식당, 공항, 터미널, 숙소 등) 사용에 대한 예절교육 실시(큰 소리로 떠들거나 욕하는 행위, 침 뱉는 행위 등)

사. 학생 및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고액의 수학여행 실시는 지양한다.

아.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체험학습비 지원 내용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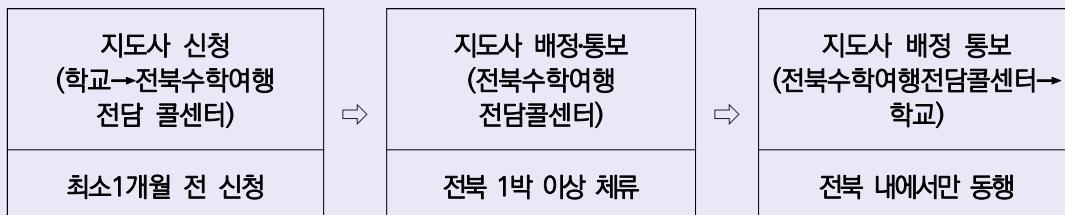
※ 2020학년도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지원 계획 알림(예산복지과-7227, 2020. 5. 21.) 참조

자. 수학여행·수련활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소방안전본부의 숙박업소 사전 점검, 전라북도의 지원 인력 배치, 제주도의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지원 서비스

◎ 전북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 수학여행 전담지도사(버스 1대당 1명) 배치하여 전북에서의 전체 일정을 동행, 인솔 지원, 문화 관광 해설, 야간 학생관리 등 수행
- 문의 :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수학여행 전담콜센터(☎ 063-232-0226)
- 인터넷 이용 방법 : 전라북도 토탈관광(<http://tour.jb.go.kr>)/여행도우미/문의게시판/수학여행 문의
- 전북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40명 활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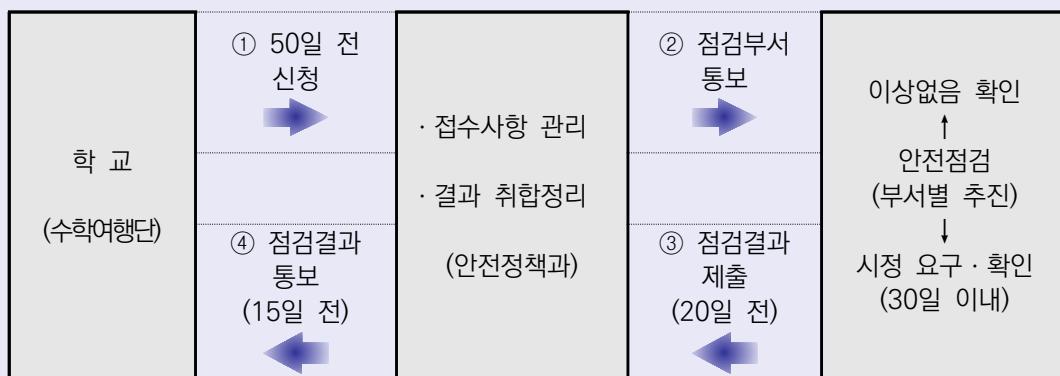
◎ 군산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 군산시를 방문하는 수학여행 학생들이 사용하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사전 점검 실시
- 문의 : 전라북도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454-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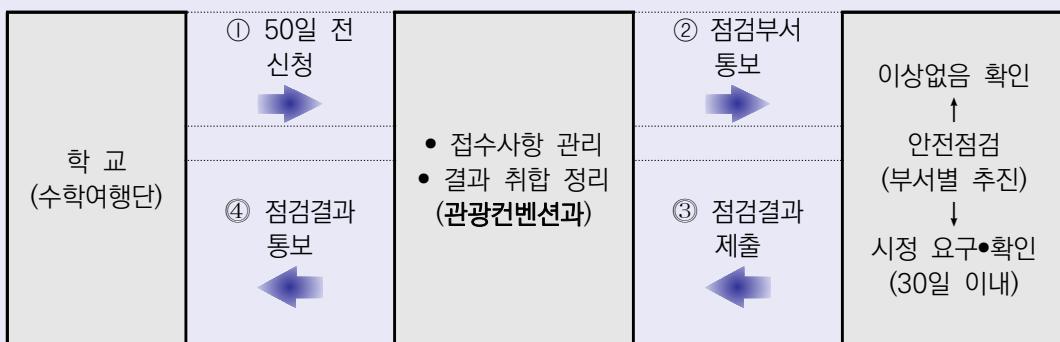
◎ 제주도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 제주도를 방문하는 수학여행 학생들이 사용하는 숙박시설, 음식점, 유원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 · 결과 회신
 - 점검 및 결과 회신은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에서 일괄 처리 하오니 그 외 기관에 점검 요청 공문발송 금지 서식13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064-710-3934)



◎ 경주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 숙박시설(시설, 소방, 전기, 가스점검) 및 음식점(위생점검)에 대한 안전점검 원스톱 처리
 - 전자문서 경로지정 : 수신(경주시장⇒관광컨벤션과)
 - 문의 : 경주시 관광컨벤션과(☎ 054-779-6984)



◎ 순천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팀이 갈 숙박시설 합동점검 확인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대상 : 269개소 관내 숙박업소(<http://main.suncheon.go.kr/stay> 커뮤니티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요청 방법 : **수학여행 일정 4주전** 신청
 - 문의 : 관광과 관광개발팀(☎ 061-749-5802, 5809)

◎ 강릉시 안심수학여행서비스

- 강릉지역 수학여행을 희망하시는 학교에서 수학여행 50일 전까지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신청하면 수학여행팀이 이용하는 숙박(민박)시설, 음식점 및 체험시설에 대하여 강릉시와 유관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안내하는 서비스(☏ 관광진흥과 063-454-3334)
-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수학여행 50일 전)/전자문서 경로(강원도→강릉시→행정국→재난안전과)
- 문의 : 강릉시 재난안전과(☏ 033-640-5284)

차.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생 주도적 기획·운영 및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한 소규모·테마형을 지향한다.

※ 수학여행 포털(크레존, www.crezone.net) 활용 : 수학여행 우수사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 프로그램 개발 자료의 맞춤형(지역, 규모, 테마 등) 정보검색 가능

■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운영 방안

- 대규모로 이동하는 획일적·답습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친밀한 대화와 체험의 공유가 가능한 중·소규모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실시(1~4학급 또는 학생 수 150명 이내 단위 운영)
- 초·중·고 학교 급별 특성 및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학생·학부모 요구 등을 반영한 주제가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테마형 수학여행 실시

〈예시〉 지역축제와 함께 하는 수학여행, 문화·역사 체험 테마, 산업 체험 테마, 일제수탈의 현장 체험, 유교문화와 선비문화 체험, 남도소리의 멋과 맛 기행 등

- 자연·지역 문화예술·공연 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획·운영
- 기존의 획일적인 시기를 지양하고, 활동 영역 및 지역에 따라 운영 시기를 다양화하여 실시
- 대규모(150명 이상)로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현지 프로그램을 소규모(100명 미만)로 운영하도록 함

■ 사례 : 교과연계 테마 수학여행(대구 ○○여고)

- ▶ 1학년 8학급(2학급씩 4팀 운영)
- ▶ 교과서 내용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테마 및 코스 설정

구분	문학기행팀	역사기행팀	지리기행팀	생태기행팀
목적	교과서 작품 배경 및 작가 생가 방문을 통한 문학 탐구	삼국통일과 불교예술을 꽂피운 신라역사 체험	산과 강이 어우러진 강원도 지형 탐방	백두대간의 남쪽 지리산 생태 탐방
(1일)	안동 하회마을 →독립운동기념관	경주국립박물관 →안압지	영월 청령포 →별마로천문대	남원 향토박물관 →광한루→육모정
(2일)	이육사기념관 →도산서원→주실마을→두들마을	남산→밀레니엄파크 →신라역사과학관	레일바이크→화암동굴→정동진	지리산노고단→멸종 위기종복원센터 →화엄사
(3일)	부석사→소수서원	불국사→석굴암 →감포 문무대왕릉	대관령옛길→삼양목장→월정사	화개민속장터→평사리→섬진강, 하동송림

2

학부모 동의 및 학생 선호도 조사

가. 수익자부담의 교육활동이므로 활동 내용, 예상경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한 후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 (의무사항)

- 학부모(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으며 강압적 참여 유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학부모 동의율을 파악할 때 개인정보보호에 유의
- 학부모 동의 비율
 - 수학여행 : 150명 이상(대규모) 및 국외(규모 무관) 80% 이상
150명 미만(중·소규모) 70% 이상
 - 수련활동 : 규모에 관계없이 70% 이상
- 학생·학부모의 과도한 동의 비율 제시로 사실상 수학여행·수련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시 교육청 기준에 따른 학부모(학생)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획 자체를 취소하거나 변경

나. 장소 및 시기, 체험활동 구성에 대한 학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한다.

3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운영

가. 성격

-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연계형 소위원회로서 프로그램 개발, 업체 협의 등 핵심적인 역할 수행(학교운영위원의 일부가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연계성 및 연속성 확보)

나. 구성

- 위원은 위원장 외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 (학생 참여 가능)
- 수학여행·수련활동 담당부장 및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실시 학년의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
- 위원 구성 및 임기, 운영방법은 학교 내부 규정으로 운영
※ 학교장 및 계약담당자(행정실장 등)는 위원회에서 제외

다. 역할

- 학부모 위원이 현장답사에 참여 및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협의
-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실시를 위한 유의사항 및 개선요구 사항 건의
※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해서만 협의

라. 협의 내용

-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실시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이전에 개최
- (수학여행) 학부모·학생·교사의 희망, 전년도 평가 결과, 관련기관 제공자료, 수학여행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수학여행 시기, 지역(장소), 교육활동 프로그램, 업체 선정 조건(입찰조건), 예상활동경비, 경비분납 여부 등 협의
- (수련활동) 학부모·학생·교사의 희망, 전년도 평가자료, 현장답사 자료, 관련기관 제공자료 등을 토대로, 수련활동 시기·장소 선정, 교육활동 프로그램, 활동경비 등 협의

■ 수련활동 장소 선정 및 프로그램 심의 참고 사항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9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청소년수련시설포털(www.youthnet.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련시설현황 확인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의해 설립하여 운영 중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www.kysc.or.kr)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현황 및 인증여부 확인

마. 계약 방법에 따른 활성화위원회 협의

계약 방법		협의 사항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1인 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구체적 코스 및 세부 운영 사항 협의 견적서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2인 이상 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수안 심의하고 계약 우선순위에 대한 1차 결정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조건 및 제한조건 검토 학교별 자체 결격사유 검토
일반(제한)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조건 및 제한조건 심사
2단계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조건 및 제한조건 심사, 2단계 제안서 적격성 평가 실시 2단계 입찰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 사전 협의
다수공급자 계약 (MAS)	5,000만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라장터 쇼핑몰 탑재 상품 중 복수안 추천, 계약 우선순위 부여
	5,000만원 이상 (2단계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단계 심사 대상 업체(상품)를 선택, 제안평가 실시(단 대상업체가 중소기업일 경우 1억 미만은 제안 요청 없이 구매기능)

※ 계약 방법별 절차 및 세부사항은 제3장 참고

4

현장답사

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은 현장답사 2회(계약 전, 시행 직전)를 실시해 되 시기·방법·대상 등은 당해 계약 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의무사항)

1회 현장답사 실시 요건

- ▶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를 통해 실시하는 경우
-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등의 안전점검을 신청하여 결과를 회신을 받은 경우
- ▶ 100명 미만 소규모 운영
- ▶ 최종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 ▶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등급 ‘적정’ 이상 시설 이용 및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 ▶ 기타 학교장의 책임 하에 수학여행·수련활동의 안전대책 등이 확보된 경우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 조달청이 적격성 및 가격심사를 통해 다수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는 ‘나라장터’쇼핑몰에서 상품 선택

나.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현장답사를 1회 실시한다. 단,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 하에 생략하거나, 실제 업무 담당자 또는 인솔자 중심으로 운영 가능하다.

다. 계약 전 현장답사는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학부모 위원, 교사 위원, 실시 학년 학생의 학부모,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시행 직전 현장답사는 실제 업무 담당자 또는 인솔자를 중심으로 운영 가능하다.

라. 현장답사는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되, 다음 사항 등을 확인한다.

서식2

서식3

- 실시경로·예정지와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교육목적 부합 여부
-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 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 청소년 유해환경 인접 여부 등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 민간 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과 프로그램인증서, 지방자치단체 시설안전 점검 1년 이내의 결과를 반드시 확인(의무사항)

마. 답사 중 또는 답사 실시 전·후에 관련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향응 기타 편의사항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서식10

〈근거 :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운영과-1312(2005. 9. 30.)〉

※ 현장답사를 실시할 경우 비용은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고, 현장답사 시 특정 업체나 수련시설의 차량 및 숙식을 제공받지 않도록 한다.

바. 동일 시설을 수년간 이용하는 경우 : 가와 동일

※ 단, 동일 시설을 2년 이상 계속 이용할 경우에는 학생 및 참가 교사들의 서면평가 결과 보통 이상이 70% 이상 나온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학생과 인솔자들의 평가가 매우 좋지 않고 불만 요인이 있는데도 특정 시설을 계속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조치 사항)

사. 계약 전 1차 현장답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 가능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여 시행 직전 2차 답사 시 확인을 철저(계약 취소 및 시행)히 한다.

※ 현장답사 시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 활용 서식1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가.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한다.

나. 성격

-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

다.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활동 참여

- 두 위원회 간의 연계성(본위원회-소위원회의 관계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운영 위원 활성화위원회 참여 가능

라. 역할

-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에서 협의한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안건 심의(자문)
- 현장체험 운영 계약 우선순위 부여 결정에 대한 심의

마. 심의(자문) 내용

-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과 실행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
 - ※ 입찰 실시 전 일정, 장소, 경비(정산 포함), 업체선정(계약방법, 입찰 및 제한 조건, 제안서 평가방법 등 포함), 안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적격성 평가 결과 확정 심의 불필요(활성화위원회 실시 결과 반영)

6

계약 담당자 확인 및 계약(세부사항 제3장 참고)

- 수련시설과의 계약 시 계약담당자 실명 확인(의무사항)
 - 청소년 수련시설 계약담당자의 실명을 반드시 확인
 - 근거 : 인천광역시각급학교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 제5조

가. 수련활동의 경우 수련비용에 대해서는 수련시설과 계약하여야 하나, 학생 수송을 위한 차량 운송 계약은 운수회사와 별도로 체결한다. (의무사항)

- 수련비용과 교통비를 일괄 계약하는 것은 금하고, 교통비는 별도로 필요 차량 수에 대해 계약한 후 학생과 인솔자를 합한 수로 나누어 각각 부담한다.
- 차량운송 계약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학생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운송회사 와 계약 조건을 명시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유도(2~3대씩 조를 편성, 순차적 이동)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사전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나. 계약 체결 시 차량 안전관련 사항 명시

- 차량연식, 보험가입, 차량상태, 운전자 자격 및 교통안전정보 등을 계약조건에 명시
※ 차량연식 : 계약 시 안전을 고려하여 연식제한은 가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9년)
단, 과도한 연식제한 지양(복지재정과-5186, 2012. 3. 6.)
- 운송업체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운전자 음주 금지조항 및 보상조항, 학교 자체 음주 측정 협조 명시
- 차량운행 5일 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안전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
- 계약조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대책 포함

- 가. 수학여행 경비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체험활동비, 기타 경비를 구분하여 적정 수준을 책정한다.
- 나. 수련활동 경비는 수련 활동비(수련시설의 식사대, 숙박비, 시설 이용료 등 구분)와 교통비, 기타 경비(입장료 등)를 구분하여 적정 수준을 책정한다.
- 다. 수련시설, 교육내용, 지도자, 음식의 질 등을 정확히 비교 분석하여 적정요금으로 책정한다.
- 라. 수학여행 인솔교사의 경비는 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되, 학생 1인 비용과 동일하게 책정 한다.
- ※ 교직원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개인에게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액 지급 시 학교운영비에서 업체에 일괄 납부한다. <근거: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운영과-1312(2005. 9. 30.)>
단, 교직원 일비는 여비에서 개별 계좌로 지급
- 마.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체험학습비 지원 내용을 반영
※ 2020학년도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지원 계획 알림(예산복지과-7227, 2020. 5. 21.) 참조
- 바. 인솔교원의 국외출장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 ※ 근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7호(2016.7.4.) 및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592호(2017.4.11.)호

III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III

현장체험학습 계약하기

1

계약의 이해

가. 계약 업무 흐름도

1.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 수립, 원가계산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2. 예산집행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서 품의 작성, 기초 금액 작성
3. 계약방법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견적 제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제출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입찰(일반·2단계 등)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4. 구매규격 사전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 5일(긴급 3일 가능)
5.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서 작성• 2인 이상 견적 제출 : 3일 이상(공휴일, 토요일 제외)• 일반(제한)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7일~40일(긴급·재공고 5일)전• 2단계 입찰 :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10일~40일
6. 개찰,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낙찰하한율 90% 이상•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낙찰하한율 88% 이상• 일반(제한) 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2단계 입찰 : 1단계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 중 예정 가격이하 최저가
7.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보증금(10% 이상), 인지세(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이상)• 낙찰자 결정 통지 후 10일 이내
8.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산출내역서
9. 선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액의 50~70% 지급 가능, 채권 확보[선금 보증서]
10.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계약기간 연장)
11. 계약이행의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연배상금(용역 0.13%, 운송 0.25%)
12. 용역완성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료검사원 검사(완료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3. 대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G2B 확인 가능]•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완납증명[G2B 확인 가능]

나. 계약 방법

계약 방법		내 용	금액 기준
수의계약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기 견적서에 의해 계약 가능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 용역 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한 견적서 제출 공고 후 계약 상대자 결정	추정 가격 5,000만원 이하 용역 계약
입찰	일반(제한) 입찰	계약 이행 능력 심사(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재무상태 등으로 제한할 경우 제한 입찰)	추정 가격 5,000만원 초과 용역 계약
	2단계 입찰 (가격·규격 분리 입찰)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계약법 제18조 ③에 의거 규격가격동시 가능)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다수 공급자 계약 (MAS)	5,000만원 미만	조달청 쇼핑몰 상품 중 희망상품 선택	납품 요구 금액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2단계 경쟁)	조달청 쇼핑몰 다수공급자 상품 중 5개 업체 이상에게 제안요청서 송부 후 평가하여 업체 선정 ※ 대상 업체가 중소기업일 경우 1억 미만은 제안요청 없이 구매가능	납품 요구 금액 5,000만원 이상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나라장터(G2B) VS 학교장터(S2B)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시스템으로 조달청에서 운영·관리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 : 교육기관의 2천만원 이하 소액의 공사, 용역 및 7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관리
- ☞ S2B는 2천만원 초과의 2인 이상 전자경매 대상에서는 이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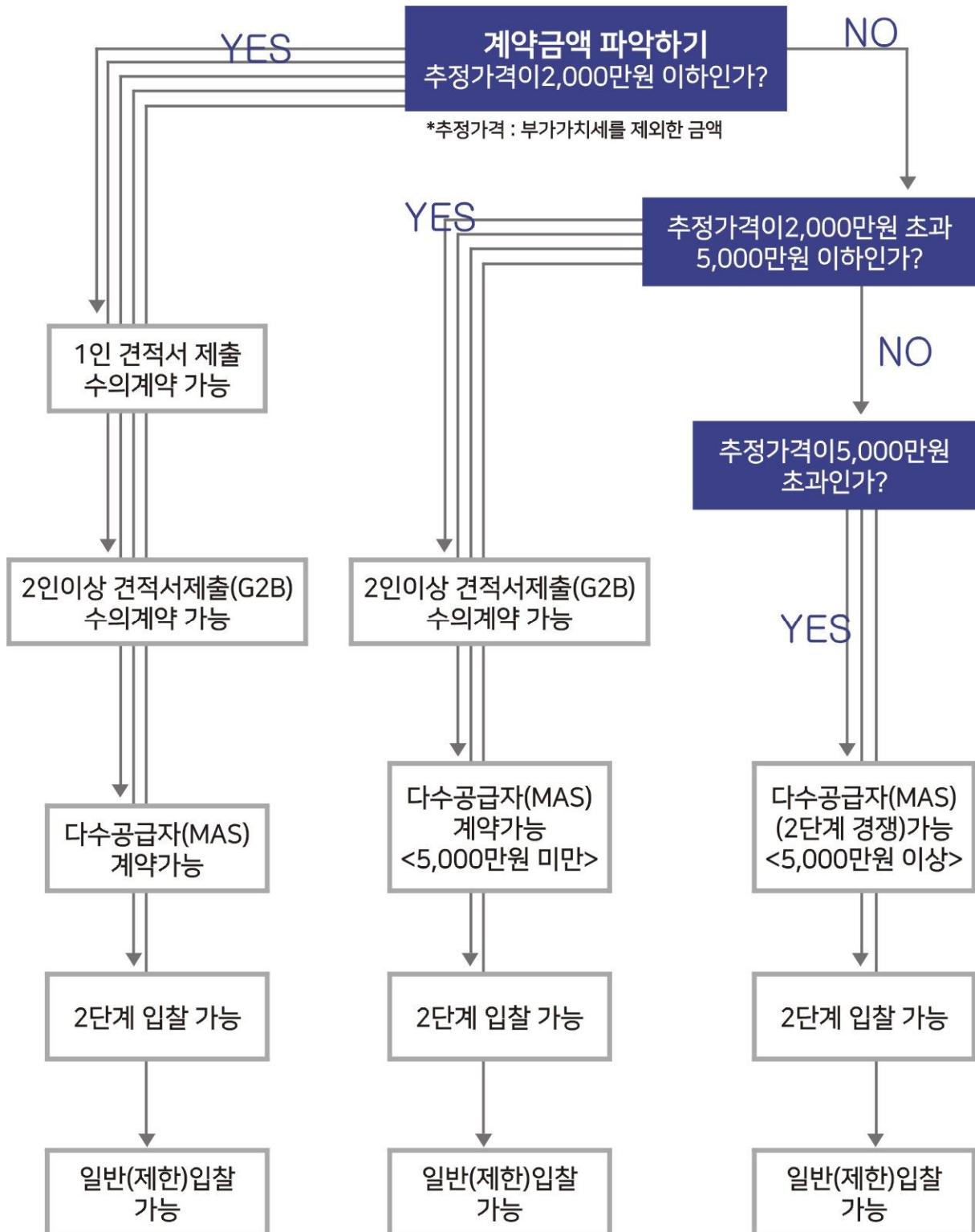
다. 추정가격에 따른 계약 방법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2억원 미만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일반(제한) 입찰/ 2단계 입찰/ 다수공급자 계약		

■ 유의사항

- 계약의 원칙은 일반입찰이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실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특정업체와의 계약(수의계약)을 위한 편법적 분할계약 금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1절
 -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함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수의계약은 지역·실적 등 중복제한 가능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 '일반(제한)입찰' 방식은 중복제한 불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
 - 예) 실적제한+지역제한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유의
 -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 공공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추정가격 2억)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수의계약 안내공고)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다목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 1억원 미만(입찰)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한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2억 미만(입찰) :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 제한)

계약방법 손쉽게 알아보기



라. 계약 형태에 따른 구분

형태	내용	계약 방법
분할계약 (직영방식)	숙박, 식사, 운송, 프로그램 모두 학교에서 직접 계약하고 운영	경비는 숙박비·식비·교통비·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계약에 대해 추정 가격별 계약 방식 적용
일괄계약 (위탁방식)	숙박, 운송, 식사, 프로그램 모두 여행사에 위탁 계약	위탁운영 방식 채택 시, 반드시 허가된 업체에 위탁(불법 알선업자 개입 금지)

■ 유의사항

- 수련활동 계약은 운송업체·수련업체로 계약
 - ※ 무허가 중간알선업자, 이벤트회사 등과 계약은 금지
- 학생들이 실제로 숙박하는 장소의 수련업체와 계약
 - 콘도에서 숙박하면서 유스호스텔과 계약하는 것은 금지

2 계약 방법별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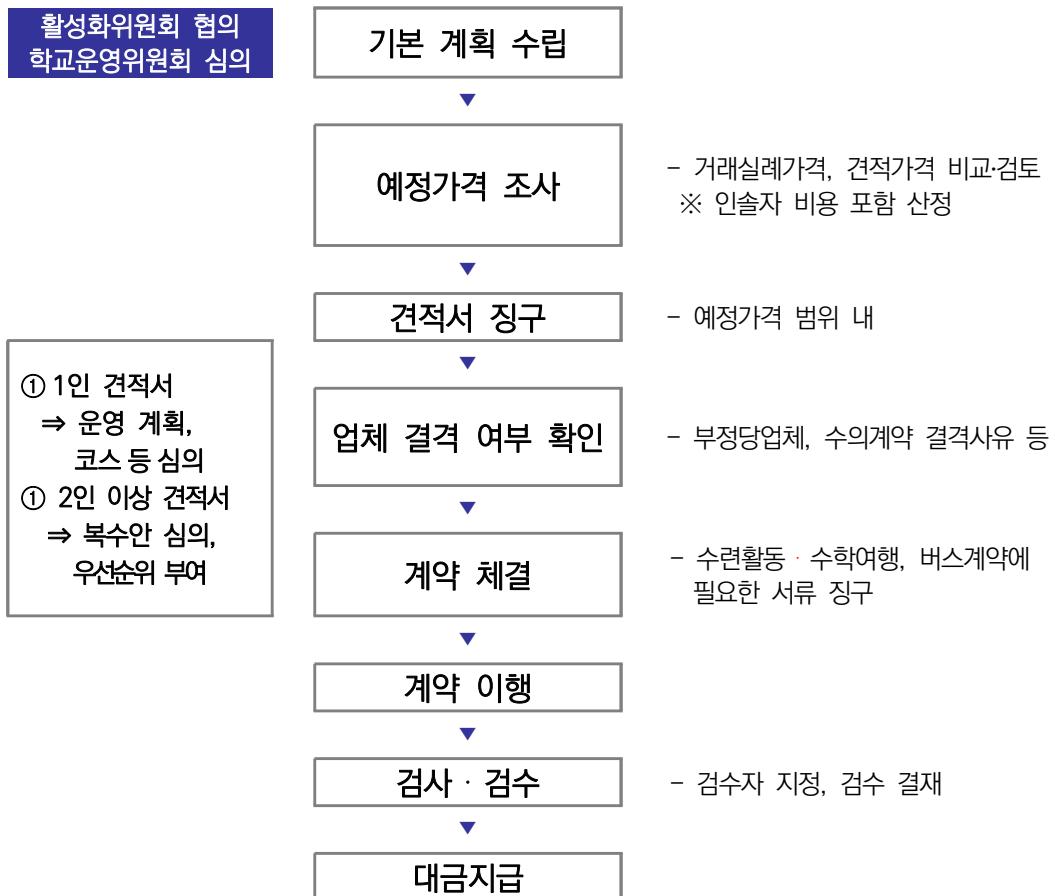
가. 수의계약

1)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금액기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5항 마목 참조)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 수학여행은 위탁 업체 선정시 위탁 총액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인솔자 포함)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에 의하지 않고 1인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 계약 가능
- 수련활동은 운송용역, 수련활동용역 각각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정정보처리 장치(G2B, S2B)에 의하지 않고 1인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가능

■ 수기견적 수의계약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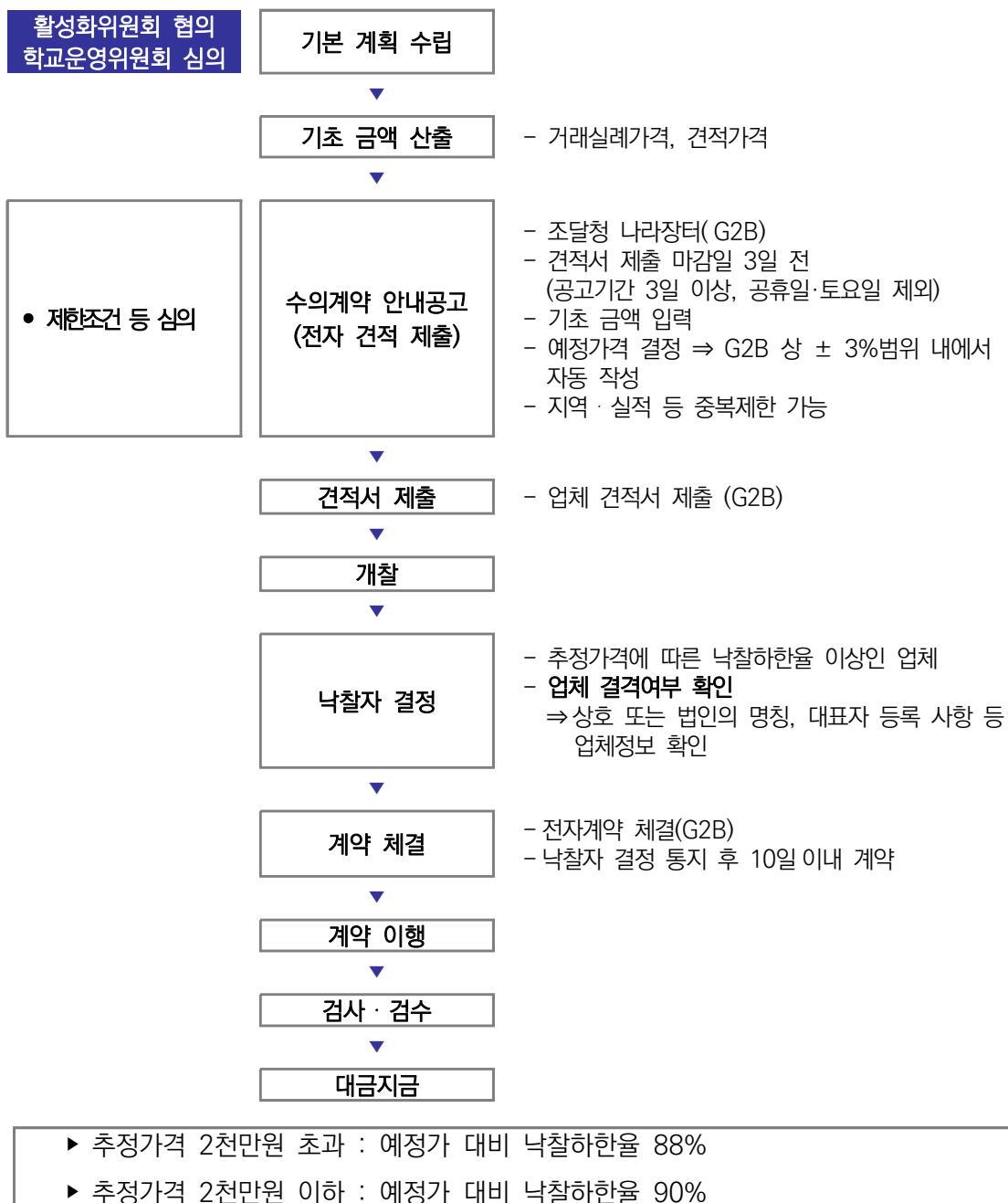


※ 2인 이상 전자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G2B, S2B 이용 가능

2)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G2B 이용 전자견적)

-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전자견적 소액수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단,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추정가격에는 인솔자 비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정
- 국내·외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결격사유로 제한 할 수 있음 (예시 :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실적이 있는 자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I G2B 이용 전자 견적 계약업무 흐름도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중 G2B만 이용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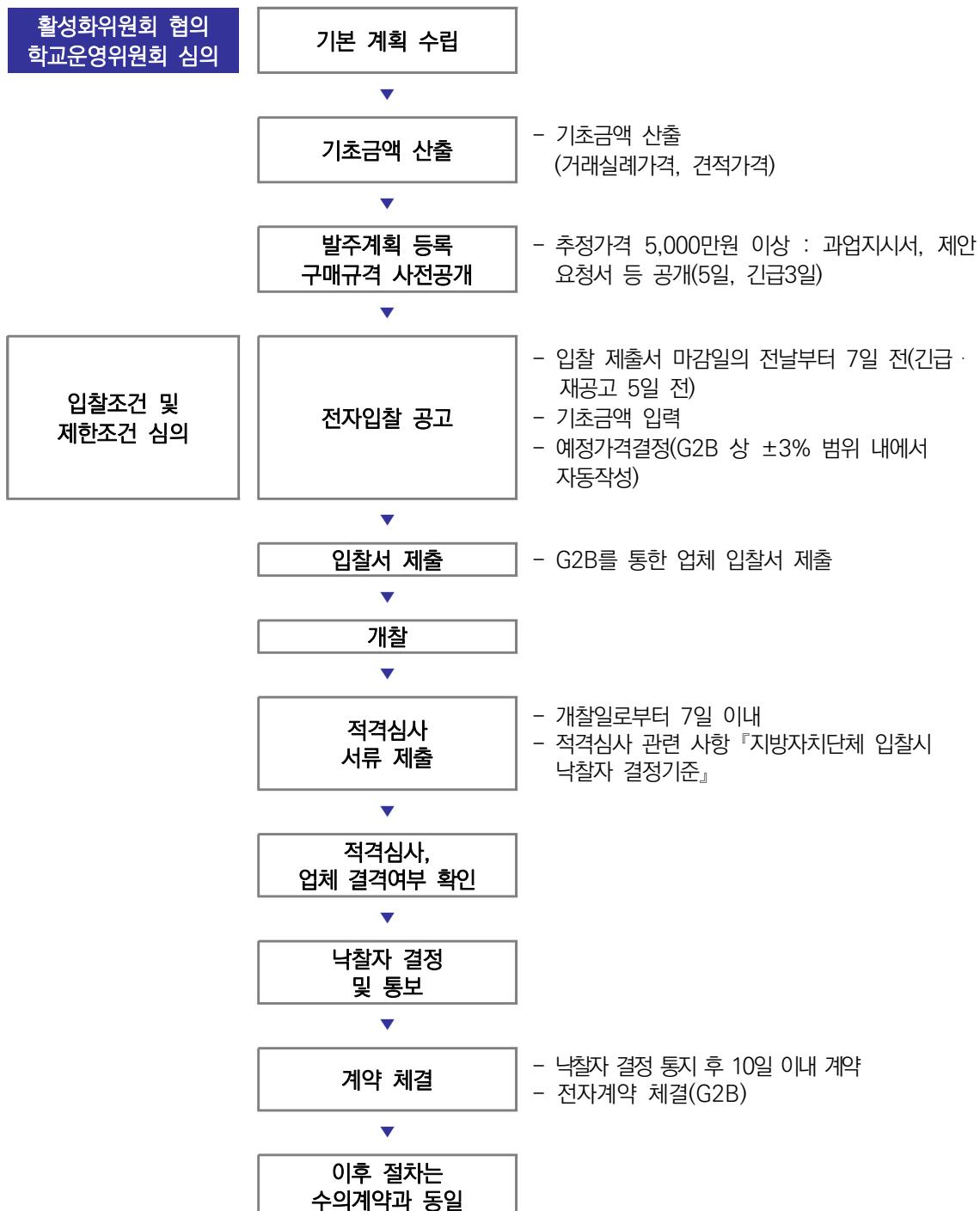
나. 입찰

1) 일반(제한)입찰

- 예정가격 대비 최저금액을 투찰한 업체를 1순위로 하여 이행능력평가를 통해 계약상대자 결정

- 과도한 지역제한으로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위한 편법적 운영을 하지 않도록 유의
 - 중복제한 불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금액과 상관없이 계약 방법이 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2단계 등)일 경우(예: 실적제한 + 지역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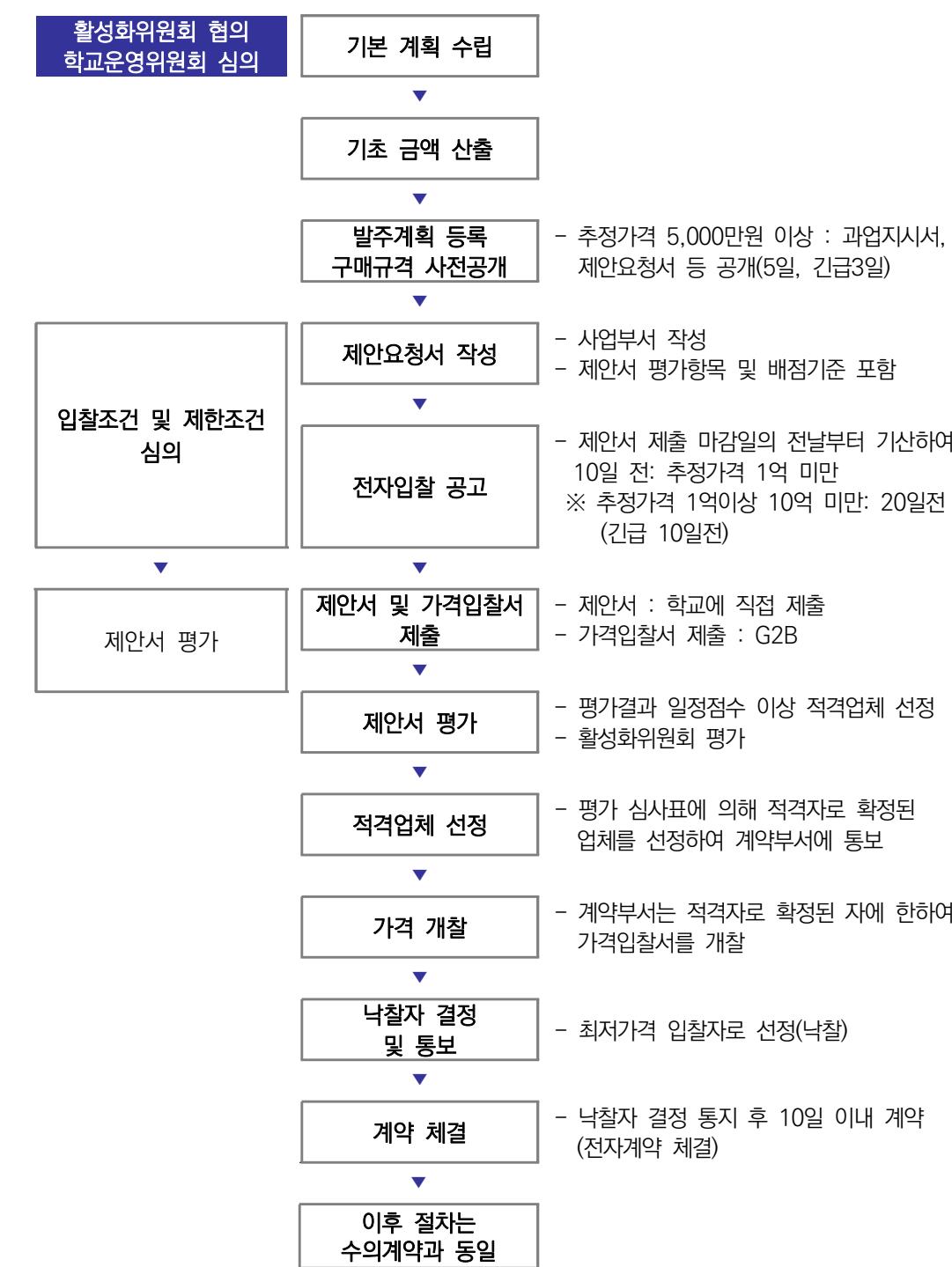
■ 일반(제한)입찰 계약업무 흐름도



2) 2단계 입찰

-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③에 의거 규격가격동시 가능

2단계 입찰 계약업무 흐름도



가) 전자입찰 공고

- 공고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 공고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 10일전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20일전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 40일전
- (단, 계약의 긴급성을 인하여 필요한 경우 및 재공고의 경우 10일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5항

- 2단계 입찰은 규격·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 규격 또는 기술입찰 통과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 공고문 등록 시 (가격·규격 동시 입찰) 유의사항
 - 계약 방법을 '제한경쟁(총액)-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로 입력
☞ 일반경쟁의 경우는 '일반경쟁(총액)-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가격입찰서 제출 방법을 '전자입찰'로 선택
 - 낙찰자 선정 방법 : 행정안전부 기준 → '제안서적격자 중 예가내 최저투찰자'로 선택
 - 수요기관업무 → 용역 → 입찰공고관리 → 기초금액(단가) 입력
-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지 않아야 함(예: 특정 숙소, 식당 등 업체명 명기한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1절 제7호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는 학교를 방문하여 접수
- 가격입찰서는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시에 G2B상으로 전자 접수

다) 제안서 평가

- 평가표 작성 ([참고 1]의 평가 배점표 참고)
- 제안서와 제안 설명을 토대로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 시 유의사항

- 공고 시 공고문에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명시
- 정량적 평가 분야는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여 평가(주관적 평가 금지)
- 공고서에 명시한 일정 점수이상 업체에 대해 적격처리

※ 상위 2개 업체 적격처리는 부적정

라)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가격 개찰 실시)
- 부적격업체(일정점수 미만인 자)는 G2B 가격개찰 시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제외하고 개찰함

※ 일정점수에 대한 기준은 발주기관에서 정함

참고 1

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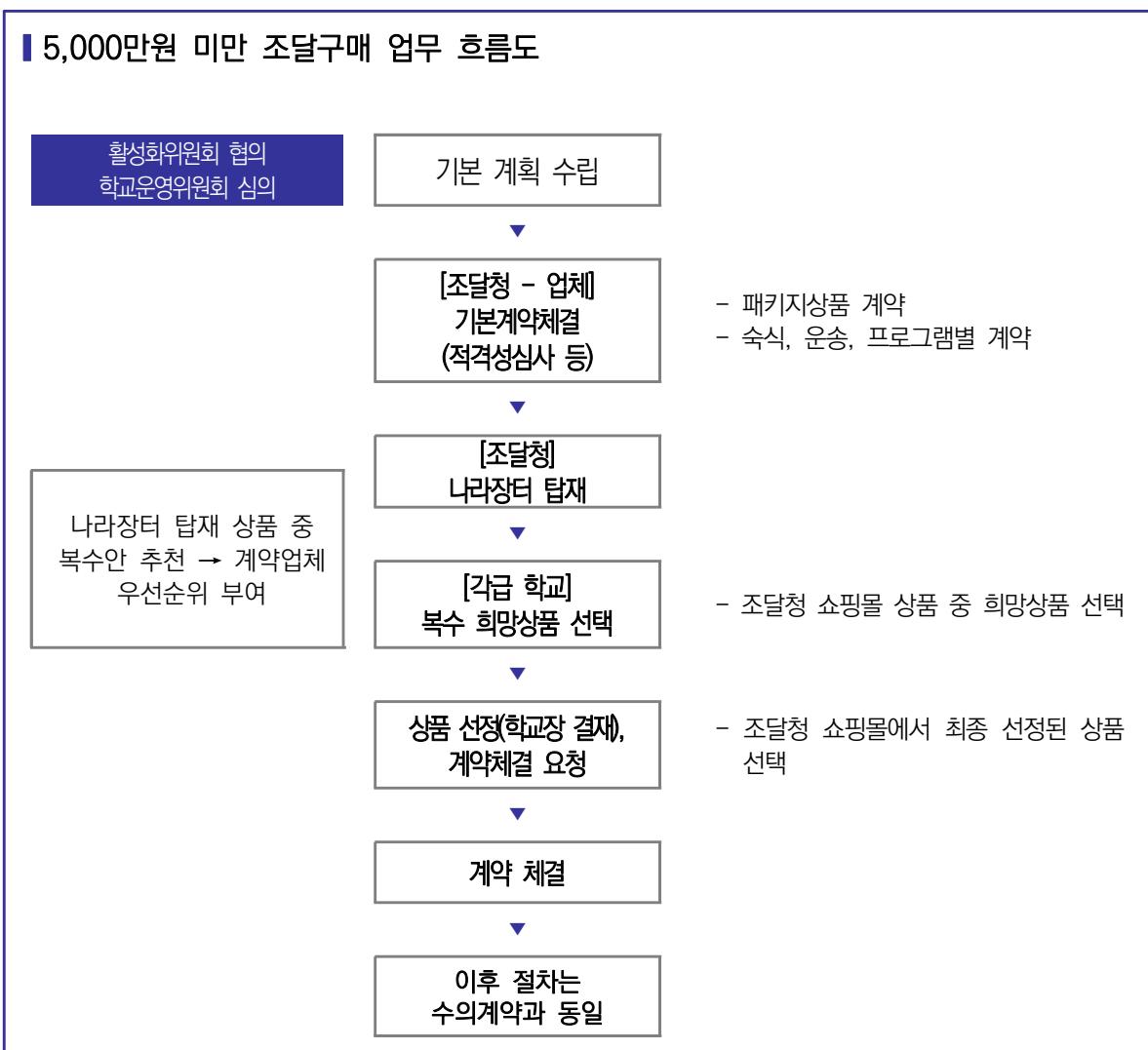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사업 예정 금액의 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하는 등 과도한 제한은 금지	10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10	
	○ 제안업체 경영 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또는 신용평가 등급)	10	
	○ 교통 - 차량 연식 - 동일회사 여부	5	
정성적 평가 분야 (65)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25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의 적정성	20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판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10	
	○ 교통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10	

다. 다수공급자계약(MAS)

1) 납품요구 금액 5,000만원 미만 : 직접 납품 요구

- 종합쇼핑몰에서 계약업체별 과업설명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납품요구 대상 업체 선택 후 ‘장바구니’에 담거나 ‘바로구매’ 선택
- 업체에서 숙박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하여야 납품요구 가능하므로, 학교에서 사전에 반드시 확인

■ 5,000만원 미만 조달구매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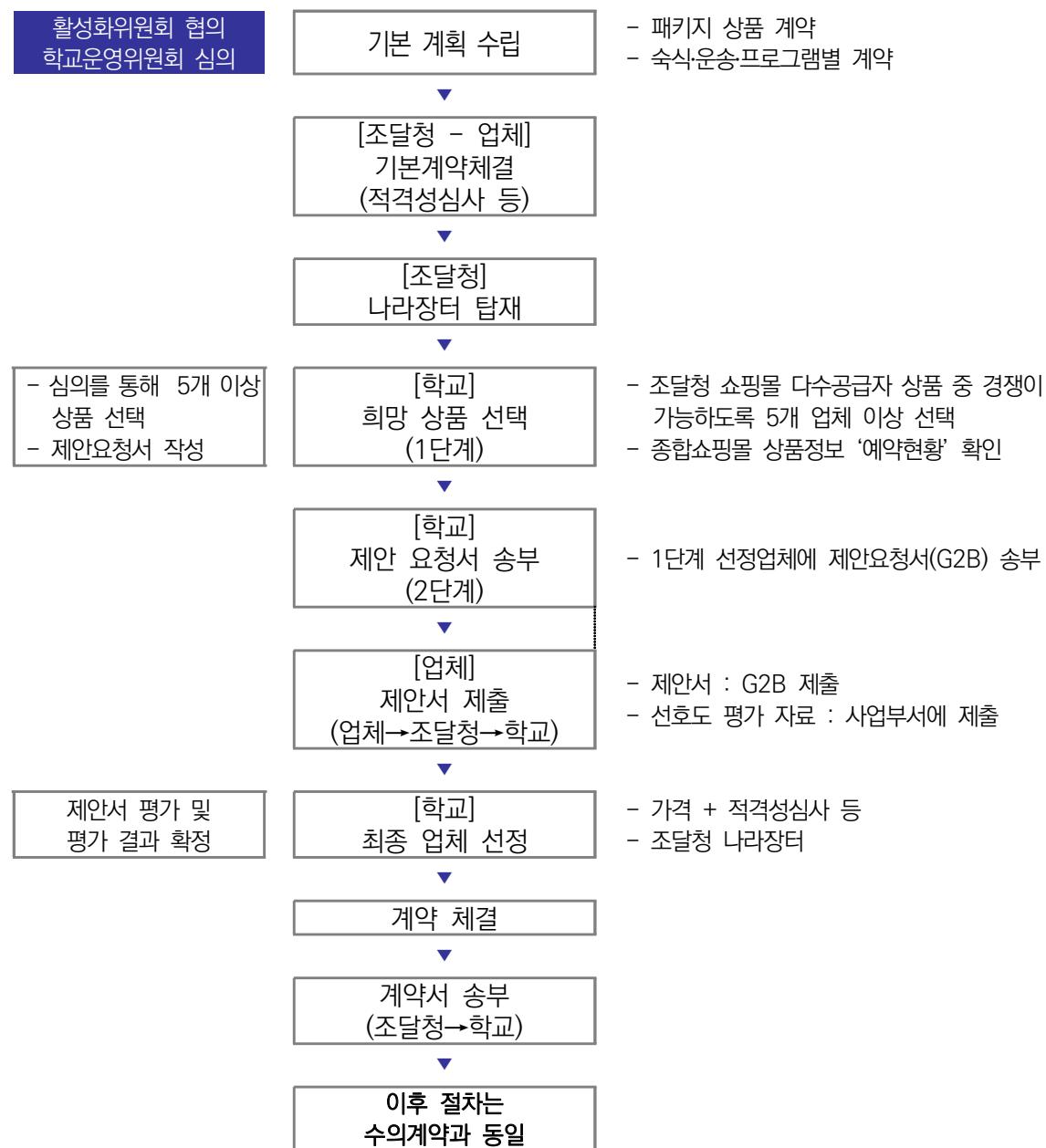
■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요

- 학교에서 자주 이용하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대하여 조달청이 다수 여행업체·숙박시설·수련시설의 납품능력과 가격을 심사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
- 학교에서는 예산과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원하는 여행사 및 숙박·수련시설을 선택하는 제도
-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2) 납품요구금액 5,000만원 이상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 종합쇼핑몰에서 계약업체별 과업설명서, 가격 등을 비교하여 5개 이상의 업체에게 '제안 요청서' 발송 후 선정방식(최저가 방식/종합평가 방식)에 따라 계약 업체 선정
- ※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함.

■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통한 계약업무 흐름도



※ 나라장터(G2B)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01.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 참조

※ 관련법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이용 시 유의사항

- 수요기관에서 5개 이상의 업체에게 “제안요청서”발송 할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 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함 (단, 수요 기관에서는 행사일정에 따른 숙박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숙박가능업체에 한하여만 제안요청 대상자로 선정)
- ※ 대상 업체가 중소기업일 경우 1억 미만은 제안요청 없이 구매가능
- 선정방식에는 최저가방식과 종합평가방식이 있으며,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평가방법 (배점기준), 제안서 작성방법 등을 첨부하여 발송
- 수요기관에서는 납품요구금액을 5천만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서 제출을 회피해서는 아니 됨

3) 수련활동·숙박·수학여행 MAS계약 상품 내용

구분	상품	
	기본	선택
수학여행	2박3일, 3박4일 : 숙박비, 식비, 입장료, 위탁수수료 등 포함	항공료, 버스임차료, 여행자보험, 레크레이션
숙박용역	1박2일, 2박3일, 3박4일(숙박비, 식비 포함)	
체험형숙박	1박2일(숙박비, 식비 포함)	체험활동
수련활동용역	1박2일, 2박3일 각 2규격 (기본/전문) : 숙박비, 식비, 수련활동비, 시설이용료 포함	
체험활동용역	마을별 체험프로그램(1,000원~15,000원)	

※ 체험활동은 수학여행 일정으로 농어촌마을을 방문하여 ‘농어촌 체험활동’을 실시하거나 별도의 ‘체험활동’으로 이용 가능

4) 수학여행·수련활동 MAS 이용 시 기대효과

- 학교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여행상품을 편리하고 간편하게 선택·구매하여 행정 소요일수 단축
- 업체는 학교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주가 가능하여 인력·시간·비용 절감
- 학교와 업체 모두 입찰서류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
- 기존 학교 개별입찰 시 출혈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 및 업체 경영난 해소
-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 온라인거래로 대면 접촉의 기회가 적어 비리소지 감소

참고 2

- 공고문 작성 참고 사이트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공고⇒용역⇒용역공고현황 검색
 - ※ 공고문 참고(공고 입력내용 등 입력 시 참고)
- 공고 입력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로그인
 - 수요기관업무⇒용역⇒입찰공고관리⇒발주계획 등록⇒사전규격관리⇒
입찰공고입력⇒신규입력
 - 입력사항을 다 입력하고 저장
(공고번호가 등록됨, 공고문에 공고번호 적음)
 - 수요기관업무⇒용역⇒입찰공고관리⇒입찰공고게시
 - 입찰공고번호⇒첨부파일관리(공고서·과업지시서 첨부)⇒입력완료⇒공개
 - 조달청 공고번호 적힌 공고문 첨부하여 게시
(게시해야 업체가 볼 수 있음)
 - 수요기관업무⇒용역⇒입찰공고관리⇒기초금액 입력
 - 입찰공고번호 입력 후 조회하여 기초금액만 입력하면 됨
(업체가 기초금액을 보고 투찰)
 - 공고입력 결과 확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입찰공고⇒용역⇒용역공고현황 확인
- 개찰 및 적격 심사
 - 조달청 나라장터 로그인
 - 수요기관업무⇒용역⇒예가작성⇒복수예가작성(개찰이전에만 하면 됨)
 - 기초금액 입력 (행정안전부기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 수요기관업무⇒용역⇒개찰관리⇒개찰⇒개찰리스트⇒개찰시작
 - 수요기관업무⇒용역⇒입찰지원관리⇒일반보고서 출력
- 공고입력 방법 등 입찰관련 문의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3

계약업체별 구비서류 및 계약 시 유의사항

가. 업체 공통(숙식, 수련, 운송, 여행사 일괄 위탁)

1) 구비서류

○ 계약 시

- 용역계약서(표준계약서 또는 소정양식 사용)
☞ 교육청 및 지자체 관할의 경우 '사용신청서'로 계약서 대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명령서(법인)
 - 견적서(비용 내역서) : 숙박료, 식비, 교통비, 시설이용료, 교육활동비,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서식9**
 -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각서), 사용인감계, 청렴서약서, 통장 사본
 -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 확인)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 인지(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 징구)

○ 계약 종료 후 대금 지급 시

- 세금계산서
- 청구서, 정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G2B 확인 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G2B 확인 가능)

2) 유의사항

- 신고·허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명시
-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과 책임의 소재, 책임의 범위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
 - 야외활동 등 학생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종류, 보상범위 등) 여부
 - 경비 또는 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탁계약자가 책임진다는 내용 기재
- 계약상대자는 대표자로 하고, 무허가 중간알선업자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 금지
- 인솔자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은 학교운영비에서 업체로 일괄 납부

-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의 경비를 업체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 (학교회계 예산 편성)
- 계약서류 징구 시, G2B 등 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한 서류는 직접 제출받지 않도록 유의 (계약서류 간소화)
-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각종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천재지변, 감염병,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등
 -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참조하여 계약서 작성
 - 업체의 영업배상보험 등 가입 여부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 표준약관

- | |
|--|
| ◆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020호(2019.08.30. 개정) |
| ○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0021호(2019.8.30. 개정) |
| ○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여행자 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 여행자 보험 가입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 가입 가능
 - 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 활동 : 수학여행·수련활동 및 고위험 활동(수상·항공·산악·장기도보 등)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여행자 보험 가입 관련 교육청 차원의 별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침 안내 시 그 방침을 준수
- 영업배상보험 가입 확인

구분	보험종류
차량	자동차종합보험
수련시설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숙식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나. 숙식(숙박, 음식)업체

1)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단표, 객실 배치도, 시설(강당, 수영장, 식당의 규모 등) 현황 자료
- 화재보험증권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50명 이상 집단급식소)
- 공통 구비 서류(가.-1) 참조

2) 유의사항

- 숙박정원 준수 및 동일 행사기간에 타교생 수용여부 문제 확인
- 교원과 학생의 식사 경비는 동일하게 하고 식단 구성도 동일하게 함
- 공통 유의사항 확인(가.-2) 참조

다. 수련시설

1) 구비서류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및 프로그램 인증서 사본
 -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확인 제외 대상
 - : 1-3의 수학여행·수련활동 공통사항 부분 참조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교육 일정표(프로그램), 식단표, 객실 배치도
- 시설(강당, 체육관, 모험시설, 수영장, 식당의 규모 등) 현황 자료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지도자 명단,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50명 이상 집단급식소)
- 공통 구비 서류(가.-1) 참조

2) 유의사항

- 숙박정원 준수 및 동일 행사기간에 타교생 수용여부 문제 확인
 - 수련시설의 수용정원 = 숙박정원 + 야영정원
 - 초등학생은 숙박 정원에 20%, 중학생은 10%를 가산하여 수용 가능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등급 이상 시설 여부 확인
-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과 동일 여부 확인
- 교원과 학생의 식사 경비는 동일하게 하고 식단 구성도 동일하게 함
- 공통 유의사항 확인(가.-2) 참조

라. 운송업체

1) 구비서류

- 차량보유 현황표
- 직영차량 운행 각서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 ☞ 계약시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 알림(복지재정과-18560, 2015.8.11.) 준수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음
- 공통 구비 서류(가.-1) 참조

2) 유의사항

- 제출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 ☞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홈페이지 접속 ⇒ 사업소개 클릭(메인화면 상단) ⇒ 안전지원정보 클릭 ⇒ 교통안전관리 ⇒ 전세버스 정보조회 ⇒ 교통안전통보서 진위여부 ⇒ 교통안전 통보서 진위확인(의무제출사항) ⇒ 전세버스 교통안전도 조회(참고, 화면인쇄) ⇒ 운송사업자 운행기록조회(참고, 화면인쇄)
-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송업체의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서 상의 차량과 실제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서 상 계약조건으로 예상운행일자(출발지-경유지-목적지, 출발 및 도착 시간 등), 차량 연식, 보험가입, 차량상태, 운전자 자격 및 교통안전정보, 승차 정원, 안전에 필요한 계약 조건 등을 적시
- 차령(연식)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참고
 - ☞ 차량연식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또는 차량등록원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를 통해서 등록원부를 직접 열람해 차량의 실제 출고일자 확인 후 계약
 - ☞ 과도한 차량연식 제한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운전자의 음주 운전 금지, 졸음 운전 방지 조항 및 보상 조항을 명시(음주측정은 관할 경찰서 협조요청)
-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량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
- 차량운행 5일 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안전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토록 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
-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2~3대 씩 조를 편성하여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

- 재생 타이어 사용 차량 금지
- 전세버스 운행시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 출발 전 차량안전점검 철저
- 차량등록원부를 통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여부 확인
- 공통 유의사항 확인(가.-2) 참조)

3) 참고사항

- 차량 디지털운행 기록
 - 목적
 - 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과속, 급정지, 급진로변경 등의 운전 습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난폭운전에 대한 교정의 활용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나) 운수회사의 교통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습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수업자가 안전교육 실시
 - 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 가) 신규차량의 경우 출고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부착하고, 기존 차량은 ‘13년 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교체
 - 나)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제출해야함
 - 활용 : 운행기록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업체 또는 종합분석 결과 양호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계약하거나, 안전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를 우선 배차 요청할 수 있음
- 종합진단표
 - 운수회사별 종합진단표 : 운수회사별 전체특성분석, 위험운전에 따른 안전권고문, 위험행동 운전자, 차량 목록 등을 제공
 - 개인별 종합진단표 : 운전자별 전체특성분석, 위험운전에 따른 안전권고문 제공(배차정보 입력시에만 제공)

마. 여행사 일괄(숙소, 운송 등)위탁

1) 구비서류

- 수학여행 일정표
-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안전요원 명단, 자격증 및 연수 이수증 사본
- 안전요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
- 공통, 숙식업체, 운송업체 등 구비 서류(가.-1), 나.-1), 다.-1), 라.-1) 참조)

2) 유의사항

- 공통, 숙식업체, 운송업체 등 유의사항 확인(가.-2), 나.-2), 다.-2), 라.-2) 참조)

IV

현장체험학습 운영하기



IV

현장체험학습 운영하기

1

현장체험학습 사전준비

가. 수학여행·수련활동과 관련된 교육자료·현장정보 등을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학부모 홍보를 통해 가정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
-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 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차량·시설 이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
 - ※ 현장체험학습 안전길라잡이, 청소년활동안전센터(www.yas.or.kr)에서 제작한 청소년용 안전가이드 등 참고·활용
 - ※ 학생 및 교직원(수련지도사, 여행 가이드, 운전기사 포함)대상 사전 예방 교육
 - ▶ 교통수단별 안전교육(버스, 선박, 항공기, 기차, 대중교통 등), 공중시설 이용예절 교육, 기타 안전사고 예방 교육(심폐소생술, 119 신고등)
 - ▶ 학교폭력(신체·물리적, 언어·정신적 폭력 및 따돌림) 예방교육
 - ▶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교육
 -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유해 물품을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교육
 - ▶ 숙소 등 체험시설 상황발생 대비 행동요령(대피로 확인 등) 교육
 - ▶ 재난대비 안전교육(지진, 화재, 태풍, 폭설 등)
-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활동 참가 시 수련시설 및 위탁업체에 명단과 신체허약 정도 등을 통보하여 안전지도 대책 수립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 인솔자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
-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연수를 실시 (안전요원 연수 이수자 활용)
 - ▶ 수학여행·수련활동 과정에서의 이동 수단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되, 가급적 안전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
 - ※ 안전 전문가 : 화재보험협회, 인명구조협회, 소방서, 소방안전협회 등 인적자원 활용

- 정부 재난 안전정보 포털 앱(안전디딤돌)을 인솔자학생이 다운받아 설치 및 활용법 숙지
- 수학여행·수련활동 준비 시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경우(예 : 우천, 폭염 및 고농도 미세먼지, 한파, 태풍 등 천재지변) 대체프로그램을 마련 운영

나. 불참 학생 지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지도한다.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는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 불참 학생 지도 계획수립 : 별도 프로그램을 수립, 운영
-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참자는 잔류학생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하고 수학여행·수련활동 불참을 이유로 결석처리 하지 않음(**의무사항**)

다. 학교장은 수학여행·수련활동 계약 업체에 학교장의 명의로 청렴 안내문을 발송한다.

라. 소규모 단위로 운영 시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소방) 점검 요청을 권장한다. 서식14

- 행사 실시 3주전까지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화재안전(소방) 점검 요청 공문 발송하고, 회신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시행
- 공문에 명확한 숙박시설(시설명, 주소, 숙박동, 학교명, 학생 수 등)을 표기하여 협조 요청

2

단체차량 이용 사전 점검

가. 운행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운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확인(종합의견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

나. 학생 수송버스 운전자 음주감지 및 호송 협조 요청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 계약 체결 시 운전자에 대한 수시 음주 여부 확인 및 거부 시 운전자 교체 등에 관한 계약 조건 명시 여부 협조 요청
-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 감지 및 호송 협조 요청 서식5
-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 부서에 1주일 전 공문 요청
- 차량 1대당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 운영
※ 단위 학교는 음주감지기를 구비하기로 함

3

단체차량 이용 당일 점검

가. 운행 당일 차량을 다음과 같이 안전 점검한다.

- 계약서(통보서)의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 일치여부 확인
- 계약서(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확인(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 증명'으로도 확인 가능)
- 출발 전 차량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차량점검(차량점검표는 학교에 보관)
※ 차량 내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운행기록증 부착 여부 확인 서식7
- 운전자와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
-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사 확인, 운전자에 대한 과속운행·음주운전·신호위반·대열운행·끼어들기 금지 등 안전 운전 지도
- 학교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음주 감지 실시
※ 원칙적으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등) 단체이동차량 사전점검 요청에 대하여 공문 접수(1주일 전 출발지 경찰서) 시행
※ 1일형 현장체험학습 음주감지는 학교 자체 실시 권장
 - 경찰의 긴급 사건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음주감지 협조가 어려울 경우 학교 안전책임관 또는 안전요원이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음주 확인 시 즉시 운전자 교체 및 112에 신고)
- 유사시 필요한 탈출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여부와 소화기 구비 확인

나. 대열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일정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출발·운행한다.

다.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한다.

라. 출발 전 학생에게 이동 시각 및 경유지, 목적지를 안내한다.

- 행렬에서 이탈하여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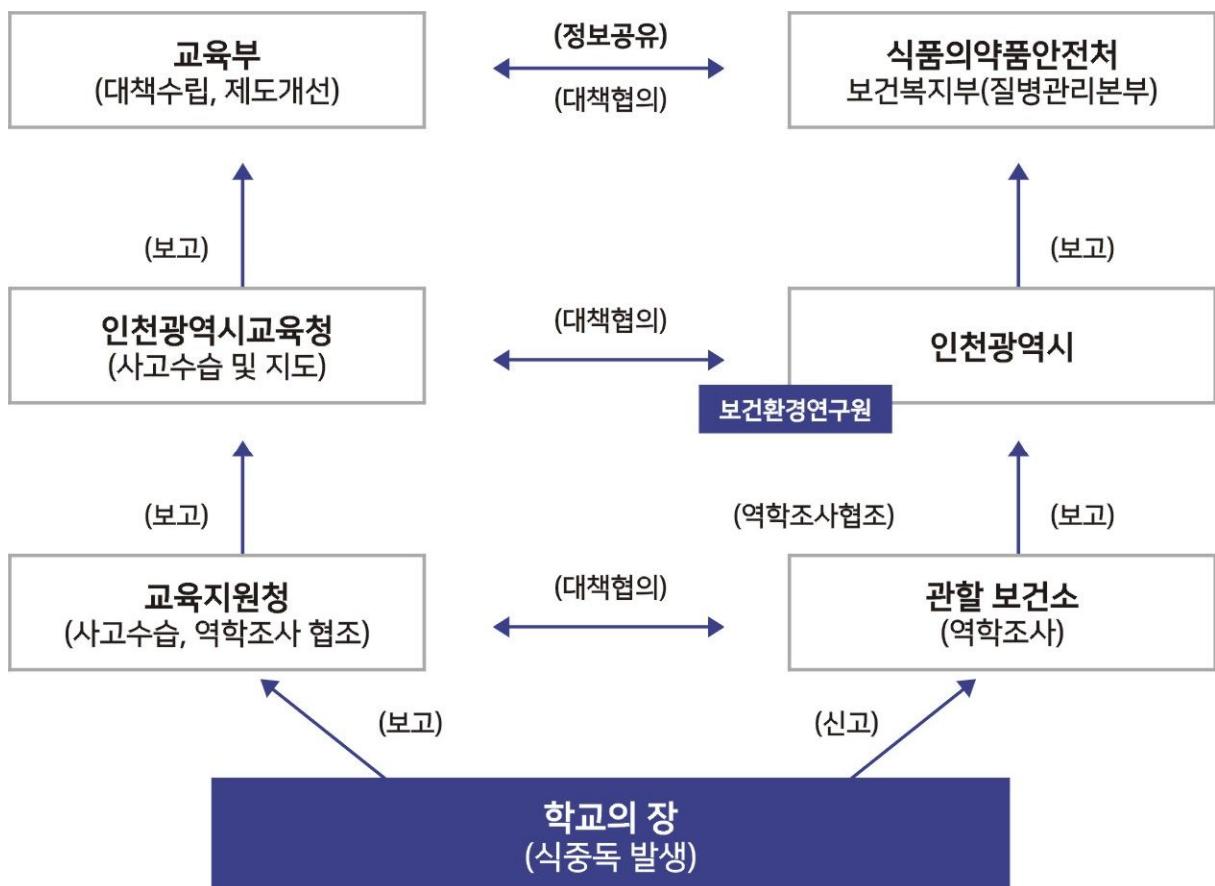
4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교육

- 가. 교육프로그램 담당교사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 한다.
- 학교 자체계획 또는 수련기관 및 위탁업체와 협의를 통해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권장
- 나. 출발 당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학생 건강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다. 수학여행 시 인솔자는 학급당 2명 이상 확보를 권장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활용한다.
- ※ 인솔자는 인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포함하는 총 인원수
- 라. 수학여행·수련활동 프로그램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청소년지도사·문화해설사·큐레이터 등 전문교육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 위탁교육 시에도 인솔자가 반드시 입장하여 교육활동 실시
 - 인솔자는 교육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안전문제·학생호응도 등을 관찰하고,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응
- ※ 위탁교육 중 인솔자는 교육현장 무단이탈 금지
- 마.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품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이동·체험활동 장소의 각종 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바.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 및 학생 안전교육 매뉴얼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특히 선박·항공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 및 비상 탈출 방법 교육
 - ※ 비상신호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피난요령, 구명기구 사용법 등을 의무적으로 여객에게 출항 후 1시간 이내 안내(선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업체에서의 안전교육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솔자가 이행 요구
 - 대중교통 이용 시 사전 안전교육(귀가 안전교육 포함) 및 교통예절 교육 실시
 - ※ 이동 시 사전 모둠 편성(2명 이상)을 권장하고, 가급적 출퇴근시간 등의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이동
- 사. 식중독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 선정

- 학교장은 사전에 관할 시·군·구(안전 및 급식위생 담당 부서)에 실시 기간, 실시 장소 (급식 장소)를 포함한 일정을 통보하고 위생·안전 점검 결과 조회 공문 요청
 - 소규모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으로 소형 일반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시·군·구의 인력 운용상 위생 점검이 어려운 경우 음식위생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 후 섭취 토록 지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 안전이 검증된 업체 이용
- 동일 원인(동일음식)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유사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동시 발생할 경우 치료 조치를 한 후 인솔책임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 ※ 수학여행·수련활동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 토록 조치 요청

■ 식중독 발생 시 대응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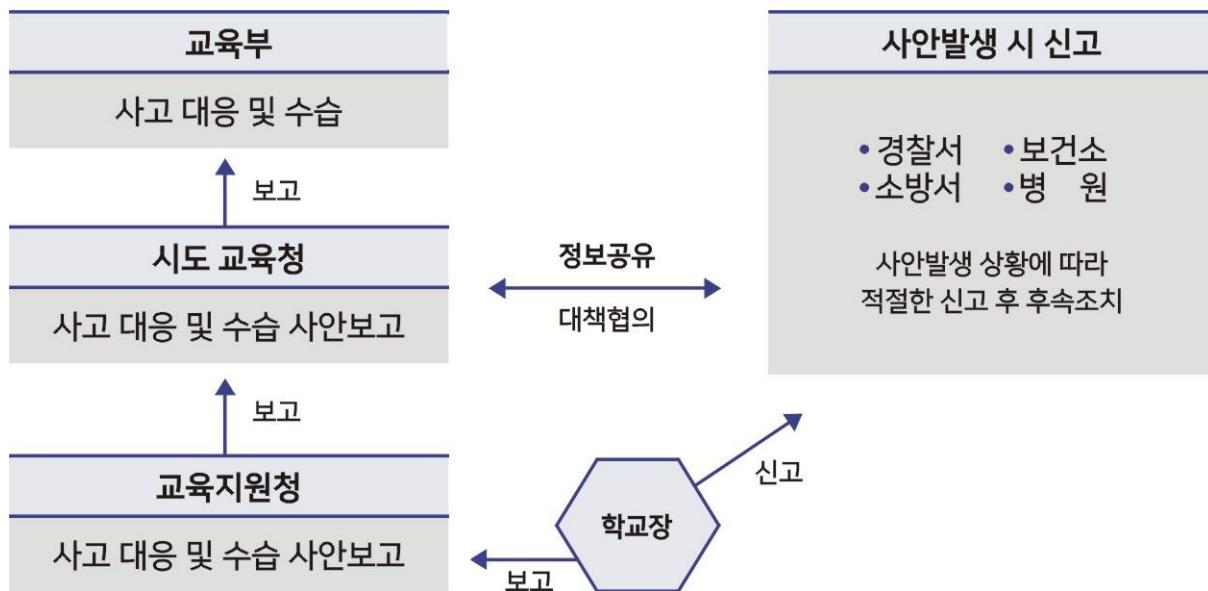
5

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 가. 수학여행·수련활동 전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한 휴대폰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학교에서 관리 한다.
- 나.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시 즉시 SNS(문자 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연락한다.
- 다. 비상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등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 사안 발생 즉시 신고 및 학교와 시교육청 담당자에게 피해상황을 즉시 유선 보고 후 사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국립학교는 시교육청 및 교육부 관련 부서에 동시 보고
- 라. 시교육청은 사안 발생 인지 즉시 교육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사안보고서를 제출한다.

서식8

■ 사안 발생 시 대응 체계



■ 수학여행·수련활동 관련 교육부로 보고해야 하는 사고

- 1) 인사사고의 경우(5인원수 불문, 경미한 사례포함 즉시 유선보고 후 사안보고)
- 2) 식중독 및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6

경비 집행

가. 경비 집행 방법

- 수학여행·수련활동 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
- 현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 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하고, 학교 법인카드 사용
 - ※ 단, 대상업소가 신용카드 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 가능하다.
- 세금 계산서를 징구해야 할 업체(일반사업자)에게서 간이영수증(과세 특례자용)을 받지 않도록 함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 임시출납원을 영수자로 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 가능함
-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 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제3호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2017. 2. 1.)

선금의무지급률	물품제조 및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이상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이상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이상	3억원미만	

- 위탁업체와 계약 시 세금계산서 징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국세청 www.hometax.go.kr 참고)
 - 위탁업체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와 위탁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징구하고, 나머지는 위탁 업체와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를 확인
 - 구분 없이 계약한 경우 ⇒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징구
- 항공료 인상으로 인해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 되는 경우 추후 반영하도록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및 공고문에 포함

나. 인솔자의 경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 인솔자의 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 ▶ 수학여행 인솔교사의 경비는 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되, 학생 1인 비용과 동일하게 책정 한다.
- ▶ 교직원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개인에게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액 지급 시 학교 운영비에서 업체에 일괄 납부한다. <근거: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운영과-1312(2005. 9. 30.)>

단, 교직원 일비는 여비에서 개별 계좌로 지급

○ 인솔교직원의 초과근무수당

- ▶ 활동 실시 전 시간외 근무명령을 득한 자에 한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 ▶ 인솔교직원은 야간 생활지도 근무조 편성을 하도록 하고 그 초과근무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 ※ 실제 야간 학생생활지도를 하지 아니한 인솔교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 ※ 국외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출국 전까지는 시간외 근무를 인정할 수 있음

7

정산

가. 수학여행·수련활동 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정산한다.

나. 수학여행·수련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 한다.

※ 환불 액수가 소액이어서 일일이 정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출하거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사업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학회계 예산편성지침)

V

현장체험학습 평가 및 사후 조치



V

현장체험학습 평가 및 사후 조치

1

사후 평가 및 결과 활용

가.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 후,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 후에는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의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평가

서식4

*평가요소: 숙박시설, 지도강사 및 프로그램, 차량, 식사 등에 대한 만족도

나. 학교에서는 평가 및 만족도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 계획, 업체 및 장소 선정, 프로그램 질 개선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다. 사후 활동은 학생이 직접 체험한 내용을 체험학습 보고서 쓰기, UCC만들기, 사진콘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의미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라.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자율활동(행사활동) 영역에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2

평가 결과 공개

가. 목적

- 현장체험학습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교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만족도 공개 등을 통하여 업체의 책무성 제고 및 운영 프로그램의 질 개선

나. 공개 방법 : 시교육청 홈페이지 현장학습 공개방 탑재

다. 공개 항목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이동경로, 학부모 동의율 등 다음 항목을 필수 공개

시도	급별	학교명	활동 구분	시기	대상 학년	이동 경로	참가 인원	1인당 경비	학부모 동의율
인천	초	00초	수학여행		0	제주	000	300,000	00%

종류	계약 상대자	계약 방법	운송업체	숙박업소 (수련시설)	이동수단	사고 발생현황	만족도 결과	비고
일괄 계약	○○ 여행사	2단계 입찰	○○ 고속	○○유스 호스텔	비행기, 전세버스	없음	00%	

※ 현장체험학습 실시 후 20일 이내 탑재

「현장학습공개방」 입력 방법

- 접속방법 :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www.ice.go.kr) / 로그인 / 부서홈페이지 / 안전총괄과 / 현장학습공개방 / 사후등록실 / 글쓰기

2. 입력사항

- 게시되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
- 개인정보가 노출 될 경우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입력대상 : 수학여행 · 수련활동
- 입력기한 : 사후 등록 - 도착 20일 이내
- 문의사항 : 안전총괄과 안전교육팀
- 프로그램 인증 관련 확인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 사후 기본 입력사항 :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 후 입력사항

구축 내용	입력 방법
인솔교직원 경비	○ “지급, 미지급”으로 구분 기재
	○ 일비를 제외한 인솔자 1인당 “숙박비, 급식비, 교통비”를 각각 기재
	○ 1인당 지급액 총액 중 일비를 제외한 금액 지급방법 “교직원에 개별지급, 업체 일괄지급, 미지급”으로 체크
만족도 및 특이사항	○ “현장학습 종료 후 교통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학생, 교사 점수를 각각 입력
	○ “현장학습 종료 후 숙(식)박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학생, 교사 점수를 각각 입력
	○ “현장학습 종료 후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학생, 교사별로 각각 입력
	○ “현장학습 종료 후 활동에 대한 전체 평가 점수”를 학생, 교사별로 각각 입력
	○ 기타 만족도 관련 특이사항 입력
학교명	○ 학교명 입력
파일첨부	○ 정산서 파일 등록

부 록



부록1 현장체험학습 관련 필수 연수 내용

1. 학생 대상 필수 연수 내용

1.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한다.
2. 인솔자 또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3. 교육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4. 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탑승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5. 각종 돌발사고 발생 시에는 인솔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6.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솔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7. 다중 이용 시설(숙소, 식당, 버스터미널 등)에서는 공중도덕을 지켜서 예절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8.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여서는 안되고 사전 안내된 수학여행 지침 금지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9. 친구 사이에 예절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친구를 따돌림, 친구가 싫어하는 심한 장난 등 학교폭력을 하지 않는다.
10. 수시로 손 씻기, 식후에는 양치질하기, 식중독 예방 등 위생적인 생활을 실천한다.

2. 교직원 대상 필수 연수 내용

1. 금품·향응·편의 수수 시 처벌·징계 수위가 매우 높음을 주지한다.
2. 수학여행·수련활동 업무 처리기준·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수학여행·수련활동 업무 처리기준·절차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며, 확실히 공개한다.
4. 수학여행·수련활동 업무 담당자는 관련한 법규, 규칙, 절차를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한다.
5. 수학여행·수련활동 업무 처리과정의 부패방지 노력을 민원인에게 확실히 설명, 이해시킨다.
6. 수학여행·수련활동 업무 관련자가 자신의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공직윤리를 잘 지켜야 한다.
7. 수학여행·수련활동 관련자는 업무처리에 적극적 노력, 업무결과에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갖는다.
8. 수학여행·수련활동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바라는 표정, 간접적 표현, 제3자의 경우 예시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표현하지 않고 느끼지 않게 한다.
9. 수학여행·수련활동 담당자가 자신, 타인의 이익을 위해 기관명칭, 직위를 이용하거나 어떠한 간접적 표현도 하지 않는다.
10. 수학여행·수련활동 담당자가 자신,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청탁 등의 어떠한 간접적 표현도 하지 않는다.
11.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및 비상연락 체계에 따른 보고를 철저히 한다.

부록2

계약·정산 관련 감사 적발 사례

- 학교에서는 『활성화위원회』에서 수련활동 제안서를 평가하였는데, 평가항목 중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정량평가는 배점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를 부여하므로 위원들의 점수가 같아야 하나, 위원 7명의 점수를 각기 다르게 부여하는 등 활성화위원회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함.
- 총경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나라장터(G2B)를 통해 소액 수의계약 하거나 2인 이상 수기건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1개 업체의 단일 견적만으로 계약을 체결함.
-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시 인솔자에 대한 항공료를 부담하면서, 학생과 동일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인솔자용 항공권을 인솔자에 대한 항공탑승 무상이용권(FOC)으로 판단하여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여야 할 인솔자의 항공료를 학생들이 부담하게 하여 인솔자의 경비 납부를 소홀히 함.
- 학교에서는 1학년 수련활동 및 2학년 수학여행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부모부담 경비를 사전에 수납하는 등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학부모 경비와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소홀히 함.
- 학교에서는 2학년 수학여행을 실시하면서 숙박업체인 '□□□□□□□대표 △△△'와 식사비를 포함하여 12,460,000원 (단가 46,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숙박비 5,852,000원 (단가 22,000원)은 '□□□□□□□대표 △△△'에게, 식비 6,384,000원(단가 24,000원)은 △△△대표 △△△에게 지급하여 수학여행 숙식계약 및 대가지급 업무를 소홀히 함.
- 학교에서는 현장답사를 1박 2일 동안 실시하면서 답사 시 지급받은 출장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을 하지 않아 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수학여행 시 문화재 입장료 명목으로 교사 □□□에게 1,497,6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임시출납원을 임명하지 않았고, 수학여행 종료 후 경비의 정산내역 및 만족도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발송 등에 공개하지 않는 등 수학여행 업무를 소홀히 함.

7. ○○학교에서는 2학년 수학여행을 (주)□□□□□대표 △△△ 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계약금액이 ○○○○년도는 111,223,740원, ○○○○년도는 73,976,200원 임에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학여행 계약업무를 소홀히 함.
8.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적응교육(수련회)을 ○○○○년도에 강원도 △△ 수련관에서, ○○○○년도는 강화도 □□수련원에서 실시하면서,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수련회 실시에 대한 동의 및 참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수련회 실시 전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성희롱 등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후평가 결과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집행 잔액 대하여도 학생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세입 처리한 사실이 있음.
9. ○○○○년도 □□학교는 수학여행을 실시하면서 현장체험 계획 수립 시 경비 부담에 대하여 소홀히 계획하여 교직원의 경비(버스임차료, 식비, 주차료 등)를 수익자 부담경비로 1,615,000원을 집행하였고, 숙식 업체로부터 숙식을 제공 받았음에도 출장비(식비, 숙박비) 732,6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10. ○○○○년도에 □□학교는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으로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이용하는 225명에 해당하는 33,750,000원(1인당 150,000원)의 항공료계약 시 1인 견적만 징구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월 ○○일 23,000천원(대한항공 13,000천원, 아시아나항공 10,000천원)에 대한 항공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급 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았음.
11. 현지교통비는 차량계약금액을 학생과 교직원수로 나누어 산정함이 타당함에도 □□학교는 수학 여행과 야영수련활동 시 교직원 교통비 542,890원을 학생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12.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현장학습 현장답사(공주일원)를 교사○○○과 ○○○이 실시하였으나, 현장학습 종료 후 경비의 정산내역 및 만족도 평가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부록3 현장체험학습 지도점검 개선사항

1. 계획수립 및 준비단계

- 수학여행·수련활동 계획은 학교교육과정계획서에 대상, 기간 등을 명시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교육장소 및 시설, 차량이동, 교육프로그램 등 활동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생활지도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학교 밖 체험활동은 수익자부담경비로 진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 및 선호도 조사를 받아야 하고 불참하는 학생에 대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도하여야 함.
 - ▶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학교현장교육계획)
 - ▶ 「초·중등교육법」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기능) 제2항
 - ▶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사례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을 진행하면서 학부모동의 및 학생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현장답사

-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 전(계약 전, 시행직전 2회) 현장답사를 실시하되 시기·방법·대상 등은 당해 계약방식 및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며, 답사는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위원, 실시학년 학부모, 계약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 동일 시설을 수년간 이용하는 경우라도 답사는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답사 시에는 생활지도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적지와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답사 중 또는 답사 전·후에 관련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향응·기타 편의사항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6조(현장답사)
 -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항(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사례 1

○○학교에서는 1학년 수련활동 현장답사 여비를 지급하면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고 연료비는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에 의거 지급하여야 하나 주유비영수증에 의거 주유금액을 지급함.

» 사례 2

○○학교에서는 1학년 수학여행 제주도 현장답사 여비를 지급하면서 국내·외 출장 및 근무지내·외 출장을 불문하고 차량임차료(일명 렌트비)는 여비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렌트비를 지급함.

» 사례 3

○○학교에서는 1학년 수련활동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답사를 통해 위험지역, 이동 경로상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에도 전년도에 동일 기관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지 않음.

3. 사전협의

-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상정 이전에 학부모·학생·교사의 희망, 전년도 평가 결과, 관련기관 제공자료,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시기, 지역(장소), 교육활동 프로그램, 업체선정조건(입찰조건), 예상활동경비, 경비분납 여부 등을 협의
 - 학교운영위원회 일부가 활성화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두 위원회 간의 연계성(본회의-소위원회) 및 연속성 확보
 -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 활성화위원회 협의 결과, 계약방법 등 심의(자문) 절차 이행
 - 참여교사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교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소요액을 학교운영비에서 업체에 일괄 납부
- ▶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학교현장교육계획)
▶ 「초·중등교육법」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기능) 제2항
▶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사례 1

○○학교에서는 6학년 수학여행을 실시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기본계획, 활성화위원회 협의결과, 계약방법 등에 대해 자문을 하여야 하나 계약 방식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지 않음.

» 사례 2

○○학교에서는 1학년 수련활동 및 2학년 수학여행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부모부담경비를 사전에 수납하는 등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학부모 경비와 관련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소홀히 함.

4. 계약

- 학교장은 수학여행·수련활동에 필요한 장소 · 시설 및 차량 등을 계약하는 경우 장소 · 시설 및 차량 등의 법적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명시
- 계약의 종류
 -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일반입찰, 제한입찰, 2단계입찰,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포함)
- 수련활동의 경우 수련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수련시설과 계약하여야 하나, 학생 수송을 위한 차량 운송계획은 운수회사와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 ▶ 전세차량 임차 현장학습 시 '운전자격 적격심사 및 차량 안전정보 제공 실시계획'(2012. 3.)
 - ▶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현장학습 안전대책(2013. 4.)

» 사례 1

- 학교에서는 6학년 수학여행을 실시하면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이면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이 64,080천원이면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함

5.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

- 학교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는 잔류학생에 대해 별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하고 수련활동·수학여행 불참을 이유로 결석처리하지 않음
- 신체 또는 정신건강 상 특별보호가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하고 활동 참가 시 수련시설 및 위탁지정업체에 명단과 신체 허약 정도 등을 통보하여 유기적인 대책 수립
- 위탁교육을 할 경우 인솔자는 현장에서 교육내용, 안전문제, 학생들의 반응 등을 보며 수학여행·수련활동 진행에 대해 평가하고 각종 생활지도 등 안전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수학여행·수련활동 출발 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종료 후 평가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차기 활동에 반영해야 함.
- 수학여행·수련활동 출발 전 인솔책임자 및 운수회사 담당자로 하여금 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는지 확인
 - ▶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제5조(학교현장교육계획), 제7조(안전교육)
 - ▶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현장학습 안전대책(2013. 4.)

» 사례 1

○○학교에서는 00학년도 수학여행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요 보호자 명단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지도계획을 수립·지도하여야 함에도 별도로 요 보호자 명단을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사례 2

○○학교에서는 1학년 수련활동 학생 운송차량에 대해 출발 전 인솔책임자 및 운수회사 담당자에게 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하나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6. 정산, 평가 및 정리

-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한 경우(지정정보처리장치로 2인 이상 견적제출 계약 제외) 계약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계약내역을 시교육청 및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함.
-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경비는 활동을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추진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함.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하며 환불할 액수가 소액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이나 학생복리비 등으로 적절히 처리함.
- 인솔자 여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되 일비 이외에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업체에 일괄 송금하며 여비의 지급방법, 대상 및 절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름.
- 수학여행 · 수련활동을 실시한 후에는 학생, 교사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현장학습공개방(시교육청 홈페이지)과 가정통신문으로 공개하고 차기년도 계획 수립 시 업체 및 장소 선정 등에 참고함.
 - ▶ 「수학여행·수련활동운영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 ▶ 「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제33조의6(수의계약내역의 공개)
 -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기능) 제2항
 - ▶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사례 1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실시 후 학생,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학습공개방에 공개하여야 하나 점검 당일까지 활동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현장학습공개방에 공개하지 않음.

» 사례 2

○○학교에서는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실시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나 수학여행 실시내역을 학교 홈페이지 및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

» 사례 3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종료 후 평가결과를 다음 학년도 수학여행·수련활동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하나, 인계인수 등이 잘 이뤄지지 않아 차기년도 계획 반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제정(2014. 9. 29 공포 인천광역시조례 제53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가 학교현장교육을 하는 경우의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현장교육"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현장답사"란 학교현장교육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현장교육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학교현장교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의 모든 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 학교현장교육에서 학생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안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교안전 향상에 대한 지원 방안
3. 안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
4. 안전교육 운영지원 방안
5. 학생안전 관리·감독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현장교육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현장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안전대책
 2. 안전교육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한다.
- ③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학교현장교육 계획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의무이행을 확인한다.

제6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학교현장교육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학교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현장교육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이의제기) ①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현장교육 계획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의 전체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현장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교육감의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모든 학교현장교육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현장교육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현장교육지원단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현장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현장교육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현장교육지원단은 다양한 학교현장교육 프로그램 및 모델 개발, 단위학교 컨설팅, 대규모 학교현장교육 점검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95호, 2014.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5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관련 법규

1.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20. 12.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1138호>

제4장 학교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초·중등학교교육과정<2015. 12. 1. 교육부고시 제2015-80호>

다. 청소년기본법<2020. 11. 20. 타법개정, 법률 제17285호>

제4장 청소년시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22조(청소년상담사)

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라. 청소년활동진흥법<2020. 11. 20. 일부개정, 법률 제17286호>

제1장 총칙

제2조 3호(청소년수련활동)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요건)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5조(보험가입)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절차)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통보 등)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마.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2019. 7. 2.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9950호>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 제5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 제7조(수련시설의 등록)
-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 별표1(제2항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14개항)
-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
- 제13조(보험가입)
 - 별표2(제2항 2호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 별표3(제2항 3호 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
-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 제19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제2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절차 등)
- 제29조(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 별표4(제1항, 수련지구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 및 면적)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바.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2020. 11. 20.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제156호>

-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
-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 제8조(수련시설 시설기준)
- 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 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2. 법적 세부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청소년기본법 제3조

- 가)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음
- 나) 청소년육성 :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면,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돋는 것
- 다) 청소년활동 :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 라) 청소년복지 :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
- 마) 청소년보호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
- 바) 청소년시설 :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
- 사) 청소년지도자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 야)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 가) 청소년활동시설 :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 나) 청소년수련활동 :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 다) 청소년교류활동 :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
- 라) 청소년문화활동 :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
- 마) 청소년수련거리 : 수련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

나. 청소년시설

- 1) 청소년기본법 제4장 제17조, 제18조, 제19조
- 2) 제17조(종류) 따로 법률로 정함
 - 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 나)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 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

다. 청소년 활동 시설

- | | |
|-----------------|--|
| 1)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3장 제10~14조, 제16~19조, 제24, 25, 31, 32조 |
| 2)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 제3장 제5, 7, 8, 10, 12, 13, 17조 |
| 3)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 제2, 5, 7, 8, 9, 13조 |

1)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가) 청소년수련시설

- (1)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2)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3)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4)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5)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6)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 나)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2)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결격사유(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 15조)

가) 운영대표자

- (1)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음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실시

나) 결격사유

- (1) 미성년자·파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최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수련시설의 시설·안전·운영 기준(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 18, 19조)

가) 시설기준

- (1)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 구비
- (2) 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나) 안전기준

- (1)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
- (2)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5)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 운영기준

- (1)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2) 수련시설운영대표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3) 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4) 이용료 및 수련비용(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

- 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징수
- 나) 인증 받은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수련활동 참여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 징수

5) 보험가입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 (1)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 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2)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3조

- (1)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을 말하며,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외
- (2) 보험금액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이어야 하며, 지급보험금액은 실 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가)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 (나)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 (다)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가 생긴 때에는 별표 3(후유장애 구분 및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 (라)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가) 및 (나)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마)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바) (다)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가)의 금액에서 (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6)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

- 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1) 1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 (2)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 3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7) 제6호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나)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7) 수련시설 안전점검(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

- 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
- 나)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은 별표 1(수련시설의 안전)과 같음

8) 수련시설의 이용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

- (1)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이용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2)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련시설을 제공
 - (가)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 (나)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다)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 (라)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나)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 제31조 제2항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9)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7조)

가)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 (4)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 (7)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
- (8)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高水敷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

라. 청소년지도자

- | | |
|---------------|--------------------------|
| 가) 청소년기본법 | 제5장 제21, 22, 23조 |
| 나) 청소년기본법시행령 | 제3장 제18, 20, 21, 23, 24조 |
| 다)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 제2, 5, 10조 |

1)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청소년기본법 제20조)

- | |
|---|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 나)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2)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청소년기본법 제23조)

- | |
|---|
| 가)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배치 |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마. 청소년활동 및 지원

- | | |
|----------------|---------------------------------|
| 가) 청소년기본법 | 제8조/ 제7장 제47, 48조 |
|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5조, 제9조/ 제4장 제34~37조/ 제5장, 제6장 |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 제4장 19, 27, 29조/ 제5장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청소년기본법 제8조)

- | |
|--|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 |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 |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 |

2) 청소년활동의 지원

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 (2)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 (1)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함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시설·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청소년기본법 제48조)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
- 나)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의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다)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운영(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가) 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운영
- 나)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를 활동진흥원에 설치·운영
- 다) 국가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
- 라)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절차(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 하려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
- 나) 가)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시기·목적·대상·내용·진행방법·평가·자원조달·청소년지도자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
- 다) 인증위원회가 가)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음
- 라)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나)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마)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6) 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청소년활동진흥법 제37조)

- 가) 인증 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
- 나)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 다)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음
 - (1) 가)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결과의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2)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 (3) 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7) 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23조)

- 가) 인증 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시간, 장소, 주관기관, 수련활동, 내용 등을 기록
- 나) 인증 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개별 청소년의 활동기록 및 인증수련활동 결과를 해당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통보

부록6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가.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형태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적정한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조직·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유도

나. 근거 및 경과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 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 경과 : 2006년부터 종합평가 실시(시설유형별 3년 주기)
※ 2014.7월부터 법적 의무화(평가실시·결과공개) 및 시설유형별 2년 주기로 실시

다. 주요 내용

- 평가지표 : 시설운영·관리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 사항에 대하여 정량 및 정성지표로 구성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평가자료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개별시설에 평가결과(안)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이행
- 평가등급 : 시설별 총 점수 기준으로 5단계 등급(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 미흡)으로 부여

라. 종합안전점검과 연계

- 6개 점검분야(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 중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종합평가' 등급 부여시 미흡이하로 조정

마.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결과 통보 및 공개
 - 여성가족부 : 교육부·지자체에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홈페이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평가거부 시설명도 공개
 - 교육부 : 수학여행·수련활동 시 종합평가 결과 활용
 - 지자체 : 운영 미흡사항 확인 및 개선 시정조치
 - 평가거부 시설에 대한 조치
 - 여성가족부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시 거부시설임을 명시, 정부지원 사업대상에서 배제
 - 교육부 : 학교대상 프로그램 참여 제한
 - 지자체 :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별도의 지도점검 실시
- * 휴지시설은 운영 재개 시 1주일 이내에 지도점검 실시
- ※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 인증여부 · 신고 내용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부록7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안내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요

가. 개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

나. 인증대상 : 청소년(만 9세~24세)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

○ 인증을 필히 받아야하는 대상

-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수상, 산악, 장기도보, 위험기구 사용, 사고대비 물질사용, 항공활동)

○ 인증신청 제외대상

- 단순 체험(견학)활동,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 내지 강좌, 운영시간 최소기준 미 충족 활동,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등

다. 인증기준

1) 활동유형 :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활동유형	내 용
기본형	1일 3시간 이상 또는 1일 1시간 이상으로 총 3시간 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활동
숙박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2) 인증기준

- 공통기준 :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자원운영, 지도자 자격, 지도자의 역할 및 배치,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안전관리 계획
- 추가기준 : 숙박형(숙박관리, 안전관리 인력 확보, 영양관리자의 자격)이동형(숙박관리, 안전 관리 인력 확보, 영양관리자의 자격, 휴식관리, 이동관리)

※ 위험도가 높은 활동 운영 시 전문지도자의 배치, 공간과 설비의 법령 준수 추가 확인

2. 인증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절차

가. 수학여행·수련활동 활동 계획 시 인증관련 확인사항

- 1) 프로그램 검색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 참가대상, 인증번호, 운영기관, 키워드, 지역, 활동일자 등으로 검색 가능
 - 프로그램의 정보(주요내용, 일정·장소, 담당자, 기관정보 등) 확인 가능
 -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확인 : www.youth.go.kr
- 2) 운영 가능 일자 및 프로그램 내용 추가 확인

나. 프로그램 위탁 시 점검사항

- 1) 인증서에 명시된 프로그램과 동일한지 확인(인증사항, 증빙서류)
 - 활동실시일 14일 이전까지 계약이 최종 완료되어야 함
- 2) 위탁 계약 중 인증사항과 다른 사항이 확인 시 부정운영 제보 가능
- 3) 내용변경 : 인증프로그램 일정 중 일부 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과 협의 후 진행 가능함 – www.youth.go.kr에서 변경사항이 적용된 일정표 및 실시 여부 추가 확인 요망 (확인 경로 : www.youth.go.kr 접속 – 우리학교 인증수련활동 참가등록 확인(메인페이지))

■ 인증프로그램의 특징

- ☞ 청소년의 발달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됩니다.
- ☞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특별기준이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현장 점검을 수시 진행하여 인증사항과 동일하게 운영되는지 전문심사원이 점검 합니다.
- ☞ 활동장소의 정기적 안전점검, 안전전문인력 의무배치, 지도자참가자 안전교육 매회 사전 실시, 관련 법적경력 조회, 응급의약용품 필수 배치 등으로 안전합니다.
- ☞ 청소년 활동유형 및 내용에 따라 전문지도자유자격자 배치기준과 보조지도자를 포함한 배치규정을 두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 ☞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행정처분이 진행(인증취소, 과태료 부과 등)되어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해 활동에 따른 배상책임 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 후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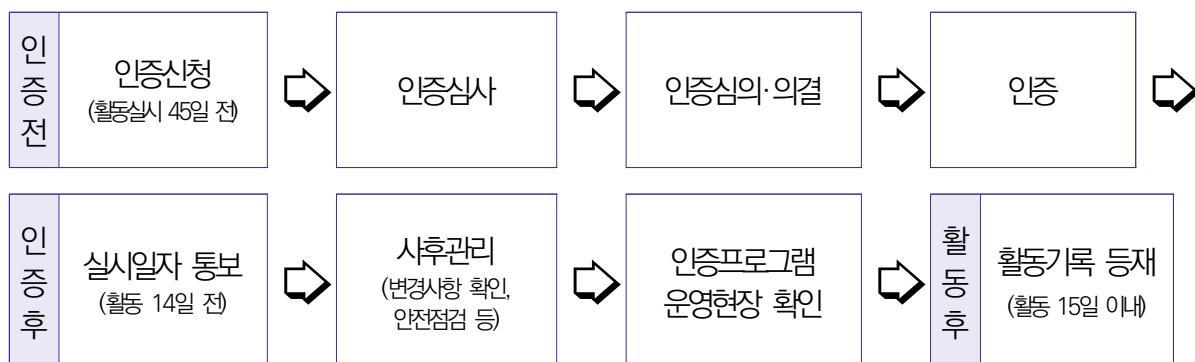
- 1) 위탁 계약 중 인증사항과 다른 사항을 확인 시 부정운영 제보
 - 제보방법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부정운영 게시판 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02-330-2852~9)

- 2) 참여자 안전관리 및 참여기록 등재를 위한 참여 학생 명단 운영기관 제출
- 제출서류 : 참가자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 반
 - 청소년의 참여기록은 국가가 관리·제공(여성가족부 장관명의)하며 일괄 출력 가능

■ 국가 인증수련활동 기록확인서 관련 조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 ③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자·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3조(수련활동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법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시간, 장소, 주관기관, 내용, 참여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활동진흥원 : 법 제6조제1항에 다른 활동진흥원의 사업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

참고1 인증제 운영절차



- 자세한 사항 확인 및 문의(불편/건의사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운영부 02-330-2852~9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www.kywa.or.kr

참고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및 인증마크

[별지 제17호 서식] - (제36조 관련)

발급번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인증번호 :
 운영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활동명 :
 주요활동장소 :
 인증기간 :
 참여대상 :
 참여인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인증마크
(인증번호, 프로그램명, 참가대상,
운영기관명과 함께 사용)

참고3 인증수련활동 검색방법

1) 프로그램 검색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청소년활동 정보지미 활동기관 안내 수련시설평가 e청소년 안내

청소년활동을 검색하세요!

로그인 | 회원가입

청소년

청소년활동 청소년 지키미 활동기관 안내 수련시설평가 e청소년 안내

청소년활동을 검색하세요!

로그인 | 회원가입

2020.11.1.(일) ~ 12.31.(목)

참여대상 재능을 나누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만9세~19세)

CGV* 재능을 통한 청소년 모두에게 경품 지급 CGV 영화티켓 청소년권 2매씩

KYWI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D O V O L

봉사활동 찾기 원하는 봉사활동을 한 눈에!

재능 나눔 등록/찾기 원하는 활동을 직접 만들어 참여

1365 연계 봉사활동 실적을 1365에 연계

인증 수련활동 찾기 안전하고 유익한 인증수련활동 찾기

인증수련활동 참가여부 확인 일정, 단체명, 활동명 등 계약 확인

비대면 청소년활동 찾기

나의 활동확인서

최근 등록된 체험활동

2020.12.07~12.16 아동청소년 온라인정책제안 공모전

2020 양주시 아동친화도시만들기

2021년 양산시청소년합창단 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055-711-1355

2021년 양주시청소년문화의집

[옥포]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055-711-1355

[고현] 고3 수능 끝나고 뭐하고 ...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055-711-1355

2021년 신랑위증 모집

[고현] 고현청소년문화의집 청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055-711-1355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청소년활동 정보지미 활동기관 안내 수련시설평가 e청소년 안내

청소년활동을 검색하세요!

로그인 | 회원가입

청소년활동 찾기

청소년활동 찾기

운영방식 전체 대면활동 비대면활동 혼합활동(대면 + 비대면)

활동영역 전체 건강/스포츠 모범개척 역사탐방 환경보존 문화예술

기타 통사협력 교류 과학정보 진로탐구 자기개발

검색어 활동명/기관명/영역명을 입력하세요.

지역 선택 선택 기관유형 선택 선택

+지역추가

참가대상 전체 연령 전체

숙박형태 전체(당일+숙박) 가격 전체

- 2) 프로그램 정보 확인 : 인증번호, 참가대상, 모집방법, 일정, 장소, 담당자, 기관정보 및 위치, 활동사진, 지자체 신고여부 등
 ※ 해당기관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 추가열람 가능

청소년활동 찾기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 찾기

코로나19 대응 청소년활동 >

자유학기제 활동 찾기 >

청소년자원봉사 Dovol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

청소년국제교류 >

청소년정책참여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 >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

▶ 더보기

환경보존 너와나 그리고 하나된 우리 IV - 중학교 -

▶ 크게보기

▶ 추가이미지

▶ 크게보기

▶ 후기등록하기

▶ 기관참여하기

▶ 활동찜하기

활동정보	기관정보	신고정보
------	------	------

▣ 활동개요

입소식
 인증프로그램 소개 및 안전교육
 위기탈출!남녀원[순환교육]

- 심폐소생술
- 환강기 교육
- 소화기 실습

베이스 과정활동[순환교육]

- 희망등등 만들기
- 핫님밧줄(공동체놀이)

선택식 체험활동 [학생 스스로 선택]

- 숲속체험

- 두드리 활동

- 패션팔찌 만들기

- 레크스포츠 활동

- 스틱밤&도미노 활동

베이스 과정활동[순환교육]

- 미니 집라인 활동

- 숲 밧줄활동

어울림 한마당(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선택식 체험활동 [학교축 택1]

- 토로소만 이야기[진로탐색 프로그램]

- 도전! 100초를 잡아라

2박3일 우리들의 모습

토소식 및 설문지 작성

▣ 활동목표 및 상세내용

- 1) 실외, 야외활동을 통해 건강 및 체력을
 - 2)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
- 기자기 즐드적이고 자발적이 참여를 통한

활동정보	기관정보	신고정보
------	------	------

▶ 크게보기

▶ 크게보기

▶ 후기등록하기

▶ 기관명

▶ 기관형태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지역

▶ 사업자번호

▶ 팩스번호

▶ 주소



부록8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안내

1. 신고제 개요

가. 개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나. 주요내용

구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수리 주체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소년정책담당부서)	
신고 주체	<p>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지도, 감시를 받는 시설, 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등 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	
신고 기한	참가자 모집 14일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19세 미만의 청소년(9~18세) -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임	
신고대상 활동범위	숙박형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비숙박형 중 일부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활동진흥원 시행규칙 별표7 해당 활동)

2. 신고 수리된 수련활동 정보 확인하기

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의 수련활동신고제에서 확인



The screenshot shows the 'Reporting' section of the YOUTH.go.kr website. The 'Reporting' icon is highlighted with a blue box. Other icons include 'Event Calculation', 'Volunteer Application', 'Achievement Recognition', 'Reporting', 'International Exchange', 'Participation', 'Post-Event Academy', 'Local Cooperation', and 'Online Education System'.

나. '수련활동신고제=>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신고활동 찾기'에서 검색어에 활동명, 기관명, 영역명 등 입력 후 검색

다. 검색된 프로그램에서 [신고 완료] 표시 확인

등록순	인기순	기관순	활동일순
 청소년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교류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제11기 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스페인 원정대 </div> <p>기관명 :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p> <p>참가비 : 2,640,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일 : 2019-01-09 ~ 18 ■ 모집기간 : 개별문의 ■ 연령 : 중 고 대 	<p>■ 지역 : 인천광역시</p> <p>■ 인원 : 30명</p> <p>■ 등록일 : 2018-07-24</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대면활동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봉사협력 </div> <p>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 같이, 어울림</p> <p>■ 인증번호 : 1109B06F-07907</p> <p>■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p> <p>■ 참가비 : 무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부평구청소년수련관 ■ 모집기간 : 개별문의 ■ 연령 : 중 고 	<p>■ 활동일 : 2020-12-01</p> <p>■ 인원 : 20명</p> <p>■ 등록일 : 2020-11-11</p>

라. 프로그램명 클릭 후 세부 내용 확인

- 참여하고자하는 프로그램명을 클릭하여 주요 프로그램 내용, 인증수련활동 여부, 보험 가입 사항, 지도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

부록9

단체차량 이동 시 대형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가. 주요 사례

구분	일 시	장 소	원 인	사상자
사례 1	2012. 2. 24.	속초방면 미시령 부근	버스가 매표대기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여 앞의 고속 버스와 7중 추돌한 사고	4명 사망 7명 부상
사례 2	2011. 4. 24.	경북 성주군 수륜면 부근	버스가 내리막 커부글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낭떨어지 에 추락한 사고	6명 사망 37명 부상
사례 3	2010. 10. 07	경부선 언양나들목 부근	버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전방의 작업차량을 추돌 후 뒤따르던 버스 3대가 연쇄 추돌한 사고	94명 부상
사례 4	2009. 8. 28	경부선 오산나들목 부근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버스가 앞차를 추돌하자 후행 버스가 연쇄추돌	8명 부상
사례 5	2009. 4. 17	중부내륙선 선산휴게소 부근	안전거리 미확보로 대열운행 중이던 버스 3대가 연 쇄추돌	4명 부상

나. 발생 원인

1) 추월(차로변경) 방해

- 추월차로에서 대열운전 시 타 차량의 추월방해로 사고위험 증가

2) 안전거리 미확보

- 타 차량의 끼어들기 방지를 위하여 차량 간의 간격을 무리하게 좁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
- 앞차와의 간격이 벌어졌을 경우 순간 무리하게 과속을 하게 됨에 따라 앞차의 급정거 시
대형사고 위험

3) 후미차량의 시야확보 곤란

- 후미차량의 전방상황 인지 곤란으로 추돌사고 가능성 높음

다. 수학여행 출발 전 확인 및 교육사항 : 담당교사

1) 운전자

- 전일 음주여부(피로상태 등)
- 대열운행 금지 및 안전운행 당부
- 탑승학생 안전벨트 착용 및 차내 소란행위 방지 안내방송 요구(출발 전, 휴식 후 재출발 시 등)

2) 학생

-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위험성 강조
- 앞좌석 탑승자 치사율 : 안전벨트 착용자의 2배
- 뒷좌석 탑승자 치사율 : 안전벨트 착용자의 3.8배
-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 : 안전벨트 착용자의 2.2배
- 차량 출발 전·후 안전벨트 착용 확인
- 운행 중 버스 내 이동 등 안전운행에 저해되는 행위 금지 지도

부록10 수학여행·수련활동 관련 Q&A

Q1. 학교에서는 실제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전 학년도에 가계약을 합니다. 수련업체와 당해 학년도에 계약을 하고자 하면 일정이 차있어 학교에서 원하는 기간에 수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A1. 수련활동의 경우 학부모 동의를 받아 현장답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서 당해 연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년도 가계약은 불가합니다.

Q2. 수학여행·수련활동 경비가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2인 이상 수기견적이 가능합니까?

A2.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22호, 2010.07.26)의 개정에 따라서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한 2인 이상 전자견적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전자견적·입찰을 권장합니다.

Q3. 수학여행은 반드시 위탁업체(여행업체)를 통해서 계약해야 하나요?

A3. 수학여행의 계약은 숙박비, 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등 업종별로 분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총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 등 일체의 경비 포함)를 기준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위탁업체(여행사)를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Q4. 청소년수련시설 외(콘도, 리조트 등)의 시설에서도 수련활동이 가능합니까?

A4. 각급 학교의 수련교육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립하여 국가인증청소년수련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시설로서 수련지도사를 보유한 청소년활동시설 포함)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유스호스텔 등으로 계약 한 후 실제 수련교육은 허가등록 되어 있지 않은 콘도, 리조트 등에서 실시하는 것은 금지되며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단,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콘도, 리조트 등에서 숙박이 가능합니다.)

Q5.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매뉴얼』을 학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A5.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수련활동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Q6. 숙박만 대규모 운영할 경우 컨설팅을 신청해야 하나요?

 A6. 프로그램과 이동 수단을 다르게 하고 숙박만 대규모로 운영할 경우도 소규모로 인정하여 컨설팅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단, 숙박시설 내 야간 생활지도를 위한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Q7. 인솔자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나요?

 A7. 답사 및 인솔자의 여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되 일비 이외의 경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업체에 일괄 송금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운영과 -1312('05.09.30)] 교통비는 필요 차량 대수에 대해 계약한 후 인원수(학생+인솔자)로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Q8.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실시(장소 답사 시 포함)하면서 해당 업체의 간소한 교통편의 등은 받아도 되나요?

 A8. 인솔자의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 관련 모든 경비(장소 답사비 포함)는 학교운영비(출장여비)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해당 업체의 금품, 음식, 향응, 교통편의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됩니다.

Q9. 동일 학년의 국내·외 수학여행 분리실시가 가능합니까?

 A9. 동일 학년의 국내외 수학여행 분리 실시는 학생간의 위화감 조성, 학부모 민원 발생 등 비교육적인 측면이 많음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Q10. 수학여행·수련활동 장소 답사 시 학부모가 반드시 참가해야 하나요?

-  A10. 수학여행의 장소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써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학부모의 답사 참여를 권장합니다.

Q11. 수학여행·수련활동의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  A11. 투명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수련활동의 실시와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실시 결과 (만족도 포함)를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Q12. 수학여행·수련활동의 답사는 매년 실시해야 하나요?

-  A12.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수련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다년간 이용하여 잘 알고 있는 시설이라도 1박 이상 숙박을 할 경우 계약 전, 시행 직전 답사를 하여야 하며, 답사의 방법은 단위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적의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13. 수학여행·수련활동의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  A13. 국내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초과근무 명령을 받고, 출장 이후 초과 근무 내역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1일 4시간 이내, 단, 귀가 일은 실제 학생 인솔 종료 시간 내의 근무시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불가)

Q14. 수학여행·수련활동의 운송업체와 계약 시 특히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A14. 계약 시 모든 절차를 계약담당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해당 학년 담당부장 입회하에 인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조건은 운전자 음주 금지조항 및 보상조항, 차량 연식, 보험가입, 차량상태, 운전자 자격 및 의무사항 등 안전 운행·피해 보상 등에 대한 사항과 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책임의 소재,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15. 수익자부담교육비인 수학여행·수련활동비를 행사실시 전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학교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요?(행사 후에 미납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A15. 수익자부담경비의 학교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16. [지침 적용 범위]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및 기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체험활동, 청소년단체 행사 등 모든 학교 밖 교육활동은 본 지침의 현장체험학습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A16.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은 시교육청 해당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지침과 안내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방침이 없을 경우 운영 과정이나 계약 관련 내용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별도의 계획이 시행되는 경우 각 부서의 자체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7. 수학여행에서 인솔교사가 취침부터 기상까지 심야에 순찰지도(불침번)를 해야 하나요?

 A17. 수학여행의 경우 인솔·지도교원은 교육활동 전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은 학교 밖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므로 24시간 사제동행을 해야 하며 야간생활지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야간 생활지도가 인솔·지도교원을 제외한 업무보조인력(명예교사, 안전요원 등)으로만 운영될 경우 사고 발생 시 인솔·지도교원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솔·지도 교사가 참여해야 합니다.

부록11 안전사고 예방 길라잡이

제1장 | 일정 점검 체크리스트 114

- ◆ 수학여행 일정 점검 체크리스트 114
- ◆ 수련활동 일정 점검 체크리스트 115

제2장 | 교통 안전점검 항목 및 조치사항 116

- ◆ 교통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16

제3장 | 음식 안전점검 항목 및 조치사항 123

- ◆ 식사 점검 체크리스트 123

제4장 | 숙소 안전점검 항목 및 조치사항 125

- ◆ 숙소 점검 체크리스트 125
- ◆ 화재 예방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27

제5장 | 활동별 안전점검 항목 및 조치사항 128

- ◆ 수상 활동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28
 - ※ 물놀이 안전 교육 자료
- ◆ 갯벌 체험 활동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30
 - ※ 갯벌 체험 활동 안전 교육 자료
- ◆ 산행 활동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32
 - ※ 산행 활동 안전 교육 자료
- ◆ 캠핑(야영) 활동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34
- ◆ 전시공연 관람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35
- ◆ 겨울철 야외 활동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136

제6장 | 활동별 응급 조치사항 137

- ◆ 교통 안전사고 관련 응급처치 137
- ◆ 항공 및 선박안전 응급처치 138
- ◆ 식사 및 숙소 안전 관련 응급처치 139
- ◆ 기타 각종 상황별 응급처치 141
- ◆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145
 - ※ 구급상자 정리요령

제1장

일정 점검 체크리스트



수학여행 일정 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객실배치도(출입구와 대피로)는 확인하셨습니까?	
	시설 내부의 소방시설은 완비되어 있습니까?	
	객실 내부의 화기(콘도형의 경우)는 통제가 가능합니까?	
	객실당 투숙인원은 적당합니까?	
	객실 내 완강기는 설치되어 작동이 잘 됩니까?	
	시설 외부(도로와의 인접정도 등) 여건은 안전합니까?	
	사업자등록증과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주방 및 식당 내부는 깨끗합니까?	
	여행 시기(계절)에 따른 메뉴는 적정합니까?	
	수송 차량의 주차 장소부터 시설 입구까지 동선은 안전합니까?	
계획	여행일정 예정지의 안전 위협 요소(시설, 주변 환경 등) 확인은 하셨습니까?	
	일정 중 체험 상황에 따른 상황별 예상되는 위협요소 확인은 하셨습니까?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 교육 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학생수송 등 각 여행일정의 학생 이동에 따른 안전지도 내용과 계획은 포함되었습니까?	
	답사 시 확인 된 안전위협 요소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습니까?	
	불참학생 지도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안전요원 배치계획은 규정과 지침에 맞게 배치하였습니까?	
시행	야간 안전지도 및 미세먼지 심각 상황, 악천후 대비 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건강상 요주의 학생은 파악되었습니까?	
	사고 조치계획(응급조치, 환자수송계획 등)은 수립하셨습니까?	
	안전사고예방교육은 실시하셨습니까?	
	출발 전과 후 인원점검은 하셨습니까?	
	이동 중 구급함 등 기본 안전사고 대비 물품은 준비하셨습니까?	
	수시(특히 취침 전, 기상 직후)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셨습니까?	
학생들이 소지금지 물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생들이 위험지역에 출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솔자는 지정된 곳에서 안전예방지도에 임하고 있습니까?		


수련활동 일정 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수련원 자체의 안전사고발생 시 조치계획(보건실 운영계획 등)은 확인하셨습니까?	
	수련원 내부(숙소 등)의 전반적인 안전 위협요소는 확인하셨습니까?	
	수련원 외부의 안전 위협요소를 확인하셨습니까?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인증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프로그램의 적정성(인원운영, 프로그램 운영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등)은 확인하셨습니까?	
	사전 안전교육실시 여부와 안전장비의 비치, 안전요원의 배치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교육시설물의 안전점검실시 상황(점검일, 상태 등)은 확인하셨습니까?	
	학생들의 활동기간에 주의해야할 안전사고예방교육은 포함하셨습니까?	
	불참학생 지도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건강상 요주의 학생 명단은 파악하셨습니까?	
계획	야간 안전지도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인솔자의 교육프로그램 참관 등의 임장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수련원 자체의 조치계획 포함)은 수립하셨습니까?	
	안전사고예방교육은 실시하셨습니까?	
시행	학생들의 휴대금지물품 등에 대한 고지와 확인은 하셨습니까?	
	수련원의 각종 시설물과 주변의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솔자의 교육 참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프로그램의 사전 안전교육실시와 안전요원의 배치여부는 확인하셨습니까?	
	교육시설물은 안전(적정성)하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안전장비활용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들의 장비사용(착용) 상태는 수시로 확인 하였습니까?	

제2장

교통 안전점검 항목 및 조치사항



교통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차량	차량 상태 점검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차량 내부는 청결하며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운전자	교통 법규 준수	학생 탑승 차량 표지(앞, 뒤)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습니까?	
		운전자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습니까? (경찰 협조 및 학교자체 음주감지기 구비)	
		안전거리,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차량은 운행 중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습니까?	
		차로를 준수하며 실선 구간에서 추월하지 않습니까?	
		운전 중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에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운전자	운전자 미팅	대열운행(2대 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행 일정을 협의하였습니까?(경유지, 목적지, 휴게소 등)	
학생 교육	안전 교육 비상 대처	운행일정은 과도하지 않습니까?(적절한 휴식 보장)	
		안전벨트 착용을 교육하고 착용 상태를 확인하였습니까?	
		운행 중 이동금지 및 비상시 대처요령 교육(대피 순서 등)을 하였습니까?	
		차량 화재 시 소화기 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휴게소 안전	위급 상황 시 비상 망치 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연락망	비상 연락망 구축	휴게소에서 지켜야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보행로 준수, 이동 및 후진 차량 주의, 휴게소 내 뛰지말 것)	
		휴게소 출발 시간을 알려주었습니까?	
기타	기타	차량 운전자와 인솔책임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학생 및 학부모 비상 연락망을 갖고 있습니까?	
		구급상자를 준비하고 약품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였습니까?	
		멀미하는 학생을 위한 위생 봉투는 준비되었습니까?	
		보호 필요 학생 명단을 확인하였습니까?(상비약, 자리 배치)	



차량 서류 및 상태 확인 이렇게 하세요.

가. 차량 출고일자(연식) 확인

- 1) 학교에서 특수조건으로 제시한 연식과 운수회사에서 제출한 교통안전 정보조회결과 통보서의 최초등록일(연식)확인
- 2)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의 일치여부(번호판)를 확인

나. 차량 종합보험 가입여부 및 차량검사 확인

- 1)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의 종합결과에 '이상없음'을 확인
(종합의견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추가 확인)

다. 차량 위생 점검 및 냉·난방 장치 확인

- 1) 차량 청결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 2) 악취는 두통, 구토, 멀미 증상의 원인이 되므로 악취여부를 확인
- 3)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라.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 부착 확인

- 1) 전면 유리창 좌측 상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X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수학여행·수련활동(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수학여행·수련활동(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안전교육 이렇게 실시하세요.

가. 안전벨트 착용 및 운행 중 이동 금지 교육

- 1) 차량의 전 좌석 안전벨트 설치 및 작동이상 유무를 확인
- 2) 차량 출발 후 도착까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교육을 실시
- 3) 차량 출발 후 완전히 정차하기 전까지 좌석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운행 중에는 이동 금지 교육을 실시

나. 개문 가능한 창문 위치를 확인 및 교육

- 1) 개문 가능한 창문의 위치를 확인
- 2) 개문 가능한 창문 주변에 탑승한 학생에게 쓰레기 투기 금지, 손 내밀지 않기, 창문을 열고 장난하지 않기 등을 교육

다. 소화기 위치 확인 및 사용법 교육

- 1)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
- 2) 사전에 모든 학생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
- 3) 차량 화재 시 소화기 인근의 학생을 지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화재를 진압
- 4) 주변에 교사가 있으면 교사가 화재를 진압하며 진압할 수 없는 화재일 경우 학생들을 신속히 대피

라.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위치 확인 및 사용법 교육

- 1)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설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
- 2) 사전에 모든 학생에게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사용법을 교육
- 3) 비상망치(형광용) 주변에 학생을 지정하여 비상시 신속히 창문을 깨고 탈출할 수 있도록 교육
- 4)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며 만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

마. 휴게소 안전교육 실시

- 1) 휴게소에서는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보행로를 이용하여 이동
- 2) 특히 이동차량, 주차, 후진차량에 주의
- 3) 학생들에게 하차 전 휴게소 출발 시간을 공지

바. 차량 출발 전 시청각 안전교육 의무 실시

- 1)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 마련
- 2) 차량 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전교육 시청각 자료 내용 안내방송 실시
- 3) 차량 내 모니터가 없을 경우 운전자의 안내로 안전교육 실시

운전자 및 운행 중 확인 사항

가. 운전자 적격 심사 여부 확인

- 1)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의 운전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배차된 운전자와 동일여부 확인
※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 자격증명'으로 확인 가능

나. 음주 감지 요청(최소 1주일 전)

- 1) 해당학교가 속한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감지 실시 요청
- 2) 2일 이후 해당 지역 경찰서에 숙소 출발 전 음주감지 요청(제주 제외) 또는 학교 자체 음주 감지기로 음주 측정

다. 대열운행 금지

- 1) 대열운행(새떼운행)이 아닌 징검다리운행(도로에서는 자유롭게 운행하고 중간 집결지에서 만남) 실시
- 2)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도록 일정시간(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출발

라. 과속신호위반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 1)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 중앙선 등 준수
- 2) 교차로에서 무리한 꼬리 물기 금지
- 3)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 조작 금지

마. 내리막길 안전 제동

- 1)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사용
- 2) 뜻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바. 운행 일정 협의 및 무리한 운행 일정 금지

- 1) 사전 협의한 시간에 차량 대기
- 2) 운행 진행상황(출발, 경유지, 휴게소 경유, 도착지) 및 시간 확인
- 3) 계절, 지역특성,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고려한 일정 수립
- 4) 2시간 운행을 하면 15분 이상 휴식시간 확보
(단,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어려운 경우 1시간 연장운행이 가능하며 이후 30분의 휴게시간 보장)
- 5) 음주, 도박 등으로 인한 출음 운전 예방을 위해 숙박시 운전자 최소 휴게시간 확인
- 6)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운영

 기타 사항

가. 사고발생 시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및 활용

- 1) 교통사고 발생 시 인솔자는 소방서(119) 및 인근 경찰서(112)에 즉시 연락
- 2) 동료 인솔자, 학교장, 교육청에 즉시 보고
- 3) 부상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림

나. 구급상자 준비

- 1) 비상 상비약 및 구급약품 준비
- 2) 내용물과 약품사용 방법을 전면에 부착

다. 멀미하는 학생 배려

- 1) 멀미하는 학생을 대비하여 위생 봉투를 충분히 준비(멀미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2) 요보호 학생 명단을 확인하고 차량 좌석배치 시 멀미 우려 학생을 배려

라. 차량 안전관련 서식 및 자료

- 〈양식〉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참고자료〉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서식5〉 학생 현장체험학습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감지 등) 요청서

<양식>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발급번호: 20141124-02186-00001

이용자명	안전한		이용(계약)기간	2014.11.25~2014.11.26(2일)			
운송사업자명	(주)세기여행사(안양)		대표자/사업자번호	임준교 / 124-81-99004			
조회결과							
순번	운전자명	제 용 일	운전자의 교육이수일	버스운전 자격유무	음주운전 체포일	교통법규 위반일	종합결과
	자동차번호	소속자명	최초등록일 (차명)	책임교습 증표일	종합교습 증표일	자동차점검 증표일	
1	강성일	2013.05.24	-	유	-	-	이상없음
	경기71비4602	(주)세기여행사	2010.05.18(4년)	2015.04.12	2015.04.12	2015.05.17	이상없음

- 주) 1. 교통안전정보는 조회일자 및 자동차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조회한 결과입니다.
 2. 종합결과는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 및 취소 등이 반영된 사항이며, 운전면허와 관련된 정보는 현재의 자격 상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정찰서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전체기간) 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교습기간 정과시 보험가입 증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동차점검의 유효기간은 만료일로부터 31일입니다.
 4. 운전자의 교육이수는 조회일로부터 과거 2년이내 사항이며,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조회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기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4.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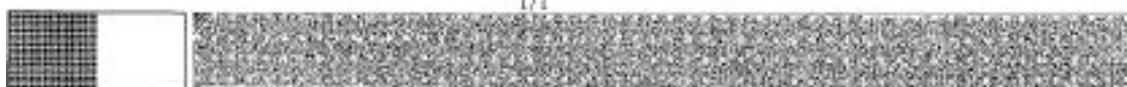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인장)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운행 팁 10가지

- | | |
|-------------------------------------|--|
| 1. 대차별 차동과 운전자가 맞는지 확인한다. | 2. 음주기준, 개표란주기 사용 등 운전자의 안전준비를 방해하지 않는다. |
| 3. 휴게소를 사전에 신경하여 대형운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 4. 출발전(휴게소 이용 후)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확인 한다. |
| 5. 운전자는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을 하지 않도록 한다 | 6. 운전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한다(2시간 운행 후 휴식) |
| 7. 운행중 안전띠를 풀거나 자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 8. 운전자의 즐거움 및 편안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
| 9. 휴식증(야간) 운전자의 품주여부를 확인한다. | 10. 운행중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한다. |

1/1



* 본 쪽 '문서'에서 '문서'를 '문서'로만 보이면 사용입니다

참고자료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구 분	관할지역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1	팩스번호2
본사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1577-0990		
서울 지역 본부	서울	서울 마포구 성산동 436-1번지	(02)375-1273	02-375-1274	0502-384-5344
경인 지역 본부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031)294-5454	031-297-9124	0502-384-5366
	경기북부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41-9번지	(031)837-0700	031-837-7604	0502-384-5368
	인천	인천남동구간석3동 172-1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3층	(032)833-5000	032-833-5002	0502-384-5383
중부 지역 본부	대전충남	대전 대덕구 문평동 83-1번지	(042)933-4324	042-933-4329	0502-384-5396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번지	(043)269-5000	043-262-6551	0502-384-5398
	강원	강원 춘천시 석사동 123-1번지	(033)262-3367	033-262-3365	0502-384-5384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경북	대구 수성구 노변동 435번지	(053)794-3811	053-794-3817	0502-384-5402
부산경남지역 본부	부산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287번지	(051)315-1421	051-328-2296	0502-384-5417
	경남	경남 진주시 총무공동 8번지 진주종합경기장내 6번출입문	(055)270-0550	0502-384-5482	
	울산	울산 남구 달동 1296-2 번지 항사랑병원 빌딩 8층	(052)256-9373	052-256-9376	0502-384-5310
	제주	제주 제주시 도련2동 568-1번지	(064)723-3111	064-723-3120	0502-384-5431
호남지역본부	광주전남	광주 남구 송하동 251-4번지	(062)606-7634	062-674-1303	0502-384-5441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211-5번지	(063)212-4740	063-211-7271	0502-384-5433

제3장

음식 안전점검 항목 및 조치사항



식사 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를 확인하였습니까?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가 양호합니까?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획	모기, 파리 등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관할청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까? (필요 시 해당 시군구에 위생 점검 요청)	
시행	식단표가 학생들에게 적합합니까?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합니까?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약속된 식단표와 식사가 일치합니까? 음식의 질 및 조리 상태가 학생들에게 적합합니까?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합니까? 인솔자와 학생의 식사가 동일합니까? 식사 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해진 장소에서만 음식물을 먹도록 지도하였습니까?	
	식사 후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습니까?	



식사 및 위생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식사와 관련된 계약서(또는 승낙사항)를 작성
- 나. 해당 업소의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단체급식소)를 확인
- 다. 식단표대로 식사가 나오는 지 일치여부 등 확인
- 라. 조리된 음식의 맛, 질감, 조리 상태 등을 식사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한 뒤 학생들에게 제공 및 식사지도
- 마. 식사 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 바. 학생 개인이 음식물 및 간식류의 휴대는 기급적 허용하지 않으며 숙소에서 먹지 않도록 지도
- 사. 해당 시군구에 해당 식당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를 사전에 확인
- 아. 특정 식품 알레르기 학생을 확인하여 식단표와 학인 후 현장에서 지도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복통·설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의무실로 이송
- 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이송 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다. 동일원인 동일증세를 보이는 식중독 의심환자(복통, 설사 등) 2명이상 발생시는 인지 즉시 보건소(교육청)에 신고
- 라. 집단 식중독이 의심되면 학교단위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후속조치와 행정지원
- 마. 식중독 원인으로 의심되는 음식 등을 모두 수거하여 보관
- 바. 원인규명을 위한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
- 사. 참가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



기타사항

- 가. 식사와 관련된 계약서에는 음식물로 인한 사안 발생 시, 배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식사 지도 중에 매 식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업체 담당자에게 전달
- 다. 학생과 인솔자는 같은 식단으로 식사해야 함
- 라. 모든 식사 전 인솔자가 먼저 취식하여 냄새 등 이상 유무 확인 후 학생들에게 제공



숙소 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습니까?	
	방안의 TV는 청소년유해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습니까?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치되어 위험하지 않습니까?	
	설치물들은 안전합니까?(가구, 유리창문, 가스레인지, 세면대 등)	
	곳곳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못 등이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3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1회용이 아닌지 확인)	
계획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청결합니까?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양호합니까?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양호합니까?	
	숙소의 안전 위해 요소를 계획에 명시하였습니까?	
시행	학생 및 교사 숙소 배치표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생과 교사 숙소는 같은 층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베란다 등 위험한 곳에는 위험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숙소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등록증에 허가된 숙박 정원에 맞게 학생들을 배치하였는지 확인
- 나. 숙소를 사전에 직접 점검하여 안전위해 요소를 파악
- 다. 숙소 내 방송 시설 유무를 확인
- 라. 숙소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
- 마. 베란다 등 위험한 곳은 '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이도록 함
- 바. 안전 위해 요소는 계획에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교사들의 주의를 당부
- 사. 점검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업체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



숙소 관련 안전교육은 이렇게 하세요.

- 가. 입소 전 학생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
- 나. 학생들에게 생활지도 교육을 하고 생활 규칙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함
- 다. 숙소에서는 특히 친구 사이에 장난을 삼가며,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지도
- 라. 위험하거나 고가의 물건은 휴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전에 확인
- 마. 허약 학생, 보호를 요하는 학생, 문제 학생 명단은 인솔자 모두가 공유하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함
- 바. 야간 지도계획(불침번)을 세우고 야간 안전요원의 배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며 학생들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도록 지도
- 사. 숙소에서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제거



숙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사고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먼저 한 뒤, 119 및 경찰서에 신고
- 나. 화재 발생 시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고개를 숙이고, 대피 경로로 신속히 이동
- 다. 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안을 간략히 메모
(메모 내용 : 사고자, 사고 발생 시간, 사고 지점, 사고 후 대처 행동)
- 라.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고, 유언비어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기타사항

- 가. 숙박과 관련된 계약서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영업 배상 책임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보험 가입 업소를 권장
- 다.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객실 배치도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표시



화재 예방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점 검 사 항	확인
답사	3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합니까?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계획	화재 및 기타 재난 사항 발생 시 대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위급 사항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시행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학생들의 화재를 일으킬만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화재 예방 안전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입소 전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발생 시 대피 경로를 안내
- 나. 숙소 및 기타 교육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 확인
- 다. 3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 라.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 마. 완강기 및 소화기의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
- 바. 학생들이 화재를 일으킬 만한 물건을 소지하였는지 확인



화재 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화재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119로 즉시 신고
- 나.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한 동선을 즉시 파악한 후 학생들을 대피시킴
- 다. 낮은 자세로 대피하며 물수건 등을 이용하여 입에 대고 이동
- 라.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
- 마. 완강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한 명씩 사용



기타사항

- 가. 수련활동의 경우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화재안전 교육을 수련활동의 일부로서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

제5장

활동별 안전점검 항목 및 조치사항



수상활동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정확한 인원 파악(수시확인)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적합(건강상태 등) 여부는 파악하였습니까?	
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해당 기구 등록사항(등록증, 조종자 면허증)을 확인하였습니까?	
사전 안전교육(위험지역 안내 등) 및 입수 전 준비운동은 실시하였습니까?	
안전장비(구명동의) 착용 여부는 확인하였습니까?	
입수 시간을 준수(식사 후 입수 시간 준수 포함) 하였습니까?	
위험지역 활동 통제 등 학생 수상활동 중 입장지도는 하고 있습니까?	
현지 기상상태(적정 수온 등)에 따른 수상활동 실시를 수시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수상활동 안전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활동 전 반드시 준비운동 등 해당 활동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안전수칙 및 위험지역안내와 통제) 교육 실시
- 나. 각종 장비(구명동의 등)의 점검과 착용상태 확인
- 다. 활동 전 기상상태 및 학생들의 건강상태 확인
- 라. 수상안전요원의 배치여부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수송을 위한 인근 의료시설위치 파악 및 숙지
- 마. 인솔자 응급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과 현장관리 계획 수립



상황 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안전사고 조치계획에 의거 침착하게 대응
- 나. 해양 사고 발생·목격 시 가장 신속하게 구조 받을 수 있는 119구조대(해양 122)로 신고



기타사항

- 가. 익수자 등의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방법의 숙지도 중요
※ 대한인명구조협회 : www.klsa.kr
- 나. 활동 중 수시로 인원점검을 통한 학생들의 개인행동 여부 등 통제 및 관리에 신경 써야함

물놀이 안전 교육 자료

□ 물놀이 안전 수칙

-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을 철저히 한다.
- 물에 들어가기 전 수온을 파악한다.
- 기상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소나기 내릴 때, 번개 또는 천둥이 칠 때, 안개가 심할 때 등은 활동을 중단한다)
- 갑작스런 이상 너울, 파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 활동 장소 구역을 정해주고 제한된 구역에서만 활동하도록 한다.
- 물의 깊이와 흐름을 알 수 있는 곳에서만 활동한다.
- 이안류(해안에서 바다로 급히 역류하는 물의 흐름)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 파도가 높거나 물살이 센 곳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 폭우에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활동을 한다.
- 식사 후 최소 1시간 30분이 지난 후에 활동한다.
- 참가 인원, 활동 인원, 휴식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 몸에 이상이 생긴 학생은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수상활동을 금지시킨다.
- 위험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한다.
- 비상연락수단과 조난신호 장비를 갖춘다.
- 바다에서는 언제 어느 때 조난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다른 통신장비(호루라기, 부표)를 갖춘다.

□ 물놀이 사고 대처 방법

- 사고 발생 시 수상 활동 참여 인원수와 구조된 인원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다.
- 사고 발생 시 인솔자와 담임 선생님께 보고하도록 한다.
- 인솔책임자 및 지도교사는 돌발적인 재난 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히 조치한다.
- 인솔책임자 및 지도교사는 해양긴급신고번호(122), 119 구조대, 인근 경찰관서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학교장은 사고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사고 발생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한다.



갯벌 체험활동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학생들의 체험 장비(발에 맞는 장화, 긴팔 옷, 여벌 옷, 챙이 넓은 모자, 면장갑, 자외선 차단제 등)는 확인하였습니까?	
자체 안전요원들의 통제와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갯골 주변에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지 기상상태(안개 등)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지정된 체험 장소를 벗어나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사례

중학생이 갯벌체험 후 몸에 묻은 진흙을 바닷물에 씻다 갯골에 빠진 후 파도에 휩쓸림. 동료학생과 교관들이 구조활동을 펼쳤으나 구조하지 못하고 실종.



갯벌 체험활동 안전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사전 답사를 통한 지정된 장소와 안전위협 상황을 반영한 안전사고예방교육계획을 수립
- 나. 반드시 교사도 혼자서는 활동하지 않으며 학생들 또한 혼자서 체험장소(갯벌) 들어가지 않도록 함
- 다. 활동 전 기본적인 체험요령과 장비 준비 상태 등을 점검
- 라. 밀물, 썰물 시간을 사전 파악하여 밀물 시간에는 갯벌에서 즉시 나오도록 지도



상황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안전사고 조치계획에 의거 침착하게 대응
- 나. 응급상황인 경우 119구조대에 알려 상황에 따른 최선의 조치로 침착하게 대응



기타사항

- 가. 맨발로 체험하지 않도록 하며 샌들을 착용할 경우 반드시 양말을 착용
- 나. 자외선 등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수

갯벌 체험활동 안전교육 자료

부
록

□ 갯벌체험 안전사고 대비 방법

- 어민들이 갯벌 출입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진입로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로로 출입하며, 진입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출입하지 않는다.
- 갯벌에 갯골이 있는 경우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밀물시 갯골에 물이 먼저 차 오르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져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갯골 주변에는 갯벌의 함수율이 높아 발이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접근하지 않는다.
- 갯벌에는 절대로 어린이 혼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어른도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
- 갯벌에 발이 깊이 빠진 경우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기어 나오며, 안내인의 도움을 받는다. 위급한 경우 119의 도움을 받는다.
- 갯벌에는 맨발로 들어가지 않는다. 발에 잘 맞는 장화를 착용하며 샌들을 착용할 경우 반드시 양말을 착용한다. 갯벌에는 어패류의 패각 등이 있어 맨발로 출입할 경우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 갯벌체험 시 되도록 긴팔 옷을 착용하며, 창이 넓은 모자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며, 썬크림을 발라 화상을 예방하고 식수를 준비해 탈수를 예방한다.
- 갯벌체험 시 갑자기 안개가 낀 경우 만조 시간과는 관계없이 즉시 갯벌에서 나오고, 방향을 잃었을 경우에는 갯벌에 조류로 인해 생긴 물결모양 결(연흔)의 방향을 살펴보고 경사가 완만한 연흔의 직각 방향으로 나오면 육지 쪽으로 나올 수 있다.

산행 활동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학생들의 건강 상태는 확인하였습니까?	
구급약과 기본 등산 물품(산행지도, 복장 등 기본 장비와 식수, 음식물) 준비 상태는 확인하였습니까?	
학생들의 산행 전 준비운동은 실시하였습니까?	
인솔계획(행렬의 선두, 중간, 후미 및 낙오자 인솔대비)에 의한 안전요원 배치상황은 점검하였습니까?	
산행 시 유의사항(안전수칙과 코스 설명)은 교육하였습니까?	
비상상황 발생 시 연락 체계는 확인(산행 중 수시로 위치표시판 확인) 하였습니까?	
수시로 인원 점검을 통한 학생들의 상황(건강, 대열 이탈 등)은 점검하였습니까?	
수시로 양손에 물건을 쥐고 걷지는 않은지 확인하였습니까?	
현지 기상상태는 확인하였습니까?	

산행 활동 안점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사전 답사를 통한 제한구역이나 안전위협 상황을 반영한 산행 일정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계획을 수립
- 나. 무리한 산행코스는 잡지 않으며 학년단위의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의 학급 단위의 산행이 안전함
- 다. 활동 전 기본적인 산행방법과 장비 준비 상태 등을 점검
- 라. 철저한 인솔계획으로 길어진 행렬로 인한 통제 및 관리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함
- 마. 산행 중 수시로 인원점검을 통한 학생들의 인원수와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 (낙으로 인한 임시 하산계획 등)을 수립

상황 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안전사고 조치계획에 의거 침착하게 대응
- 나. 응급상황인 경우 지도와 위치표시판의 확인을 통해 인근 산악구조대나 119구조대에 알려 상황에 따른 최선의 조치로 침착하게 대응

☞ 기타사항

- 가. 봄철, 가을철 산행을 원칙으로 하고 무더운 여름이나 겨울산행은 지양
- 나. 인솔 시 선두의 인솔자는 산행코스를 숙지하고 되도록 유경험자를 배치하며 중간책임자도 두어 적절한 산행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
- 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익숙하지 않은 산 속에서의 위치 파악을 위해 지도와 등산로 중간 중간에 있는 위치표시판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중요
- 라. 일기 변화에 따른 대비책을 계획단계에서 반드시 수립

산행 활동 안전교육 자료

- 산행 시에는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천천히 걷고 손에는 가급적 물건을 들지 말아야 한다.
-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을 더 조심해야 한다.
 - 내려갈 때에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안전하게 디딘다.
 - 굽은 모래나 돌이 있는 길을 내려올 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넘어지거나 발목을 빠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 산행 전·후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품다.
- 일기 예보를 확인해 날씨와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
 - 기온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덧입을 옷을 챙긴다.
 - 햇볕이 뜨거운 날에는 모자를 씌우거나 선크림을 발라 준다.
 - 여름이나 초기을에는 몸에 모기약을 바르는 것도 좋다.
- 구급약과 비상식량 및 헤드렌턴을 준비한다.
- 산에서는 정해진 길로 다니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 (가을철)낙엽을 주의해서 밟고, 해가 짧아지므로 가능한 한 일찍 출발해서 해가 남아있을 때 하산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 (가을철)보온 의류를 준비한다. 기온의 갑작스런 강하는 가을철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잡으려는 행동은 동물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산행 중에는 화기 소지를 금하고, 산에서 조리를 해서는 안 된다.
- 음식물 쓰레기는 잘싸서 되가져오도록 하고, 자연보호 활동도 겸하여 실시한다.



캠핑(야영) 활동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해당 캠핑장(야영장)이 등록 · 허가된 시설인지 확인하였습니까?	
구급함 준비 및 의약품 보충은 하였습니까?	
안전사고 예방교육(답사 내용 중심)은 실시하였습니까?	
시설물(텐트 및 주변) 관리(고정줄과 팩)와 상태는 확인하였습니까?	
화기(휴대용 가스버너와 연료) 관리 상태는 확인하였습니까?	
부식(음식물) 관리 상태는 확인하였습니까?	
기상과 취침 전 학생들의 건강상태는 점검하였습니까?	

» 사례

- 사례1. 2007년 1월 충북 회양동에서 텐트 내 화로대 사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 사례2. 휴대용가스버너 폭발사고로 인한 사고
- 사례3. 텐트 스트링(고정줄)에 걸려 고정팩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



캠핑(야영) 활동 안전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화기(휴대용 가스버너 등)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 나. 텐트 설치 후 고정팩 다운 및 스트링(줄)에 안전표지(야광테잎 등)부착
- 다. 독충(벌, 뱀) 대비 주변 위험요소 확인 및 주의
- 라. 야외 생활 시 감염될 수 있는 질병 예방(개인위생 관리)
- 마.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불자리(캠프파이어)를 만들지 않도록 함(화재 위험)
- 바. 소화기 비치 및 관리상태, 응급시설 및 현지 안전요원 배치 상황 점검,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로 확인 및 숙지



상황 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일행들이 동요하지 않게 계획된 안전사고예방 계획에 의거 상황대응
- 나. 간단한 응급조치와 함께 인근 의료시설을 이용 또는 119구조대 연락 조치



기타사항

- 가. 인솔자는 활동 전에 기본 야영법(야영지 선정과 텐트 설치 등)을 숙지하여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
- 나. 되도록 겨울철 캠핑은 지양하고 기본 시설(급수시설 및 보건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캠핑장 을 이용
- 다. 절대로 캠핑시설 주변에서는 뛰지 않도록 주의


전시·공연 관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단체 관람(전시, 공연) 시 학급별 인솔자를 배치하여 현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입·퇴장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지 않도록 교육 했습니까?	
관람시간(퇴장시간)에 대한 공지는 하였습니까?	
대피로와 출입구에 인솔자를 배치하였습니까?	


전시·공연 관람활동 안전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답사 시 확인된 대피로와 출입구에 대한 사전 안내와 통제계획 수립
- 나. 단체 대규모 관람 시 인솔자의 학급 단위 입장 지도로 상황 발생 대비
- 다. 기본적인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 실시


상황 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안전사고 조치계획에 의거 침착하게 대응
- 나.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조대 연락
- 다. 화재 발생 시 비상벨이나 소리를 쳐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방서에 신고
- 라. 화재나 정전사고 발생 시 입장하고 있던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현장을 대피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이동


기타사항

- 가. 좁은 실내 공간을 활용한 관람시설은 사전에 선택지양
- 나. 인솔자들끼리 모여 있어 상황발생 시 학생들의 통제 및 관리의 소홀이 없도록 사전 계획 수립



겨울철 야외 활동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기본교육은 시행하였습니까?	
활동 전 준비운동을 하였습니까?	
학생들의 장비 준비와 착용은 수준과 상황에 맞게 되는지 확인하였습니까?	
안전요원의 배치와 운영은 적절하게 되는지 확인하였습니까?	
인솔자들의 입장지도(초급자 리프트 등승 등)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건강상태(피로에 따른 휴식 등)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 겨울철 야외 활동 안전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 가. 강습 대상 학생의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시 고려해야 하며, 초보자는 인솔자나 안전요원과 함께 리프트에 등승하는 등의 입장지도를 고려해야함
- 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운영되는 곳(스키, 썰매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각별한 안전사고예방교육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상황 발생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 가. 주로 탈골이나 골절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현장 주위의 안전을 우선 확보
- 나. 안전요원에게 연락 후 의무실로 후송과 이후 인근의료시설 또는 119구급대에 연락

❄ 기타사항

- 가. 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과의 연락체계 확보가 중요하고 해당 활동장과 인근의료시설과의 연계와 119구급대와의 연락 조치 등이 포함된 사고발생 조치계획을 수립
- 나. 처음 체험하는 학생의 경우 안전교육을 받았더라도 과도한 긴장과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음으로 항상 주의와 관찰

제6장

활동별 응급 조치사항

 교통안전 관련 응급처치

가. 멀미

- 1) 승차 전 멀미 예방약을 사용
- 2) 앞자리에 앉도록 함(뒷자리가 상대적으로 진동이 심함).
- 3) 멀미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
- 4) 창문 밖 먼 곳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함

▶ 불이는 멀미약 사용법

- ①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승차 4시간 전에 미리 붙인다.
 - ② 사용 후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사용한 손으로 눈을 만지면 동공확대 등 부작용 발생)
 - ③ 효과 지속시간이 72시간이므로, 그 전에 다시 붙이지 않는다.
 - ④ 갈증, 안통과 동공확대, 오심과 구토, 어지럼증, 방향감각 상실, 기억력 감퇴, 환각과 착란 등의 부작용 증상 나타나면 즉시 떼어 버리고, 물을 충분히 마신 후 안정한다. →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병원을 방문
- ☆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1시간 전에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나며, 지속시간이 짧은 대신 부작용이 덜하므로 초등학생의 경우 먹는 멀미약을 권장한다.

나. 차내 화재 발생

- 1) 인솔자는 학생들을 불길을 피해 질서 있게 신속히 하차시키고 도로 밖 안전지대로 대피
- 2) 탈출구가 막힐 경우 비상 탈출용 망치(형광용)로 유리창의 모서리를 깨고 대피로 확보
- 3) 최종 하차 후 차량 탑승 학생 수를 정확히 확인
- 4)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할 지 판단
- 5) 119로 신고

▶ 소화기 사용 요령

- ①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 ② 불이 난 곳을 향해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쥔다.
- ③ 불길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뿌린다.

다. 추돌 사고

- 1)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다친 학생이 있는지 확인
- 2) 목 또는 허리 손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 3)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함

라. 전복 및 추락

- 1) 개방된 모든 통로로 신속히 대피
- 2) 탈출구가 없을 경우 탈출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통로를 확보
- 3)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
- 4) 최종 탈출 시 차량 탑승 학생수를 정확히 확인

마. 차량이 물에 빠졌을 때

- 1) 학생들이 이동해야 할 방향을 판단하여 알림
- 2) 안전띠를 풀고 신발과 옷을 벗어 신속히 탈출
- 3)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침착하게 기다리다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출입문을 열고 탈출
- 4) 최종 탈출 시 차량 탑승 학생수를 정확히 확인

항공 및 선박안전 관련 응급처치

가. 항공 안전수칙

- 1) 비행기 이·착륙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기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
- 2) 비행기에 탑승하면 산소마스크, 구명조끼, 위치 확인 및 사용법을 숙지
- 3) 비행기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신호를 확인하고, 비상시에는 두 손을 포개 앞좌석에 대고 팔 사이로 머리를 감싸 안아 몸을 웅크리는 충격방지 자세를 취함
- 4)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테이블 사용 전 상태로 위치시키고, 젖혀 놓은 등받이는 최대한 직각으로 세움. 의자가 뒤로 젖혀진 상태로 사고가 나면 충격의 범위가 넓어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 있음
- 5) 비행 전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상황발생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른다.

나. 항공 비상시 행동요령

- 1) 비상상황 발생 시 소지품 및 동반자를 찾기 위해 탈출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 2)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뛰어내린다.

- 3) 플래시나 플래시 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몸에 지니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충돌 전 좌석 등받이를 반듯이 세우고 안전벨트를 매며 허리를 굽혀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 4) 물 위 비상착륙 시 보트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 팔을 걸어 원을 만들고 구조를 기다린다.
- 5) 사고 비행기에서 벗어나면 신속하게 최대한 먼 곳으로 대피한다.

다. 선박 안전수칙

- 1) 구명조끼 착용법을 숙지하고 선내 탑승후 구명조끼 보관 위치를 확인한다.
- 2) 함께 탄 선생님 또는 어른과 함께 구명보트가 있는 위치를 확인한다.
- 3)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 출입금지 장소에 승무원의 허락없이는 출입하지 않는다.
- 4) 비와 눈이 오거나 바람이 강한 경우 위험하므로 갑판으로 나가지 않는다.

라. 선박 비상시 행동요령

- 1) 충돌사고나 좌초사고, 전복이나 침수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을 비상벨이나 큰소리로 알린다.
- 2) 선내방송이나 승무원 안내에 따라 움직이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확보하고 구조선을 기다린다.
- 3) 배에서 킁 소리나 폭발음이 들리고 배에 충격이 가해지는 등 사고 시 가능한 선실에서 벗어나 탈출이 쉬운 갑판으로 피한다.
- 4) 비상구가 열리지 않을 때는 가까운 곳으로 비치된 도끼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 5) 배가 침몰시 성급하게 바다로 뛰어들면 와류현상으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나 주변을 빨아들여 물 깊은 곳으로 잠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6) 배가 기우는 반대 방향의 제일 높은 쪽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 7) 탈출이 필요한 위험한 상황으로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구명조끼를 입고 신발을 벗는다.

식사 및 숙소 안전 관련 응급처치

가. 식중독 관련

- 1) 구토 및 설사가 나아질 때까지 음식 대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
- 2) 이온음료나 물 1L에 설탕 4t와 소금 1t를 섞어 충분히 마시도록 함
- 3)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원진료를 받도록 함

■ 병원으로 가야 하는 복통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시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복통 - 복부가 팽만하거나 누르면 아픈 복통 -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토, 열을 동반하는 복통 - 어지러움, 출림, 혼미한 느낌 |
|---|--|

나. 비출혈(코피)

- 1)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콧망울을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10분 이상 압박하여 지혈
- 2) 코뼈 부위에 냉찜질
- 3) 입으로 호흡하게 하며, 코피가 목으로 넘어가면 뱉어 내도록 함
- 4) 타박상으로 인한 경우, 30분 이상 지혈되지 않으면 병원진료를 받도록 함

다. 추락사고

- 1) 의식은 있으나 머리 충격이 의심되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즉시 119에 신고
- 2) 대부분 골절 등 손상이 있으므로 팔, 다리 등을 무리하여 움직이거나 일어서지 않도록 하고 천천히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함
- 3) 환자의 의식, 호흡, 손상 정도 등을 관찰하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라. 화상(열화상)



[출처: (주) 동화사 중학교 보건교과서 178쪽]

■ **햇빛(일광)화상은 (1도 화상과 같이) 찬물이나 찬물수건으로 열을 충분히 식히고, 화상연고를 바른다.**

■ **병원으로 가야하는 화상**

- 화약 약품이나 전기 화상, 흡입 화상
- 화상 부위가 얼굴, 손, 발, 관절, 생식기관인 경우
- 화상에 의한 통증이 계속될 경우
- 화상의 부위가 넓은 경우

▣ 기타 각종 상황별 응급처치

가. 산행, 도보 이동, 기타 야외활동(운동 상해)

1) 외상의 응급 처치



[출처: (주) 동화사 중학교 보건교과서 177쪽]

2) 외상의 종류별 응급처치

긁힌 상처(찰과상)	베인 상처(절상)	찢긴 상처(열상)	찔린 상처(자상)
상처부위를 씻고, 소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혈부위를 압박하여 자혈 후 소독한다. ° 상처가 깊거나 벌어진 경우 봉합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부위를 씻고, 출혈부위를 압박하며 심장보다 높게 해준다. ° 상처가 깊거나 벌어진 경우 봉합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얇게 박힌 물체는 제거하고 자혈 후 소독한다. ° 깊게 박힌 물체는 빼지 말고 수건 등으로 고정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 상처가 크거나 이물질이 많이 묻었을 경우 파상풍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진료를 요함.

3) 염좌, 탈골, 골절의 응급처치

가) 염좌: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진 상태

☞ 다음의 RICE처치법으로 통증을 줄이고, 부종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 병원으로 이송



[출처 : (주) 동화사 중학교 보건교과서 179쪽]

나) 탈골 : 관절에서 뼈가 어긋한 상태

(1) 손상된 상태 그대로 부목 등을 이용하여 고정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

(2) 절대 임의로 교정하지 않도록 함

다) 골절 :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

(1) 골절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 후 병원으로 이송

(2) 뼈가 피부 밖으로 노출된 복합 골절의 경우 119에 도움을 요청

4) 벌에 쏘이 경우

가) 카드 등으로 긁어서 벌침을 제거

나)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도록 함

다) 얼음이나 찬물로 찜질

라) 안면 홍조, 안구 가려움, 전신 발진, 구토, 어지러움 등을 보이는 경우 또는 평소 음식 등에 흔히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던 경우에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5) 뱀에 물린 경우

가) 119에 신고

나) 환자를 똑바로 눕혀 음직임을 최소화하고, 시계, 벨트 등 조이는 부분을 풀어줌

다)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킴

라) 2~3cm 넓이의 천으로 물린 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가까운 5~10cm의 위치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묶어줌

마) 압박대 매기, 칼로 째기, 입으로 빨아내기, 얼음찜질 등을 하지 않도록 함

6)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가) 절단 부위를 가볍게 씻어 물에 적신 손수건 등으로 싸고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하여 말라붙지 않도록 함

나) 절단물을 쌈 비닐봉지를 얼음이 든 통에 담아 차갑게 유지

다) 절단 부위 상부는 압박붕대 등으로 묶어 지혈하며 신속하게 병원(수지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

7) 치아가 손상된 경우

가) 치아가 부러진 경우 부러진 치아 조직을 깨끗한 물로 씻어 병원으로 이송

나) 치아가 빠진 경우 빠진 치아는 물로 살짝 씻어서 가능하면 잇몸에 잘 끼워서 가거나, 우유나 식염수에 담가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

다) 피가 나는 잇몸은 손수건 등으로 눌러 지혈

8) 눈 손상

- 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절대로 눈을 비비지 말고,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그고 눈을 깜박거려 이물질이 나오도록 함
- 나) 눈을 다친 경우 머리를 올린 자세로 눈을 감고 안정하도록 하며, 안통, 시야 흐릿함 등의 이상증상이 있다면 병원진료를 받도록 해야함
- 다) 눈에 출혈이 있는 경우 지혈하지 말고, 종이컵 등으로 두 눈을 보호하고 압박되지 않도록 하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9) 일사병: 더운 곳에서 운동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

- 가) 시원한 곳으로 옮겨 눕히고, 겉옷은 벗도록 함
- 나)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20~30cm)하며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함
- 다) 소금물이나 이온음료를 섭취하도록 함
- 라) 찬 물수건으로 몸을 적시거나 부채질을 하도록 함
- 마)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이송

10) 경련, 발작

- 가) 질식 예방을 위해 머리와 몸을 옆으로 돌려줌
- 나) 환자 주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치워야 함
- 다) 물, 음료 등을 마시게 하지 말고, 옷은 느슨하게 풀어줌
- 라) 경련 시 입에 어떤 물질도 넣어서는 아니 됨
- 마) 경련 중 눈과 손발의 움직임, 지속 시간 등을 면밀히 관찰
- 바) 경련이 끝난 후 다시 경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

11) 두부 타박상

- 가) 머리를 약간 높이고 눕히도록 함
- 나) 타박상 부위에 얼음찜질을 해줌
- 다) 의식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
- 라) 피가 날 경우 깨끗한 천으로 출혈부위를 압박하여 지혈 후 병원으로 이송

■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할 상황

- 잠깐이라도 의식을 잃은 경우
- 토하거나 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
- 귀나 코에서 피가 나거나 맑은 액체가 나오는 경우

나. 수상 활동, 동계 야외활동 등

1) 물에 빠진 경우

- 가) 큰 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손이나 나뭇가지, 로프 등을 이용해서 구조
- 나) 보트가 없다면 튜브나 구명줄을 머리 위로 던진다. 로프가 없다면 옷을 길게 연결하여 던지도록 함
- 다) 학생이 의식이 없다면 수영하여 뒤쪽으로 접근해서 물 밖으로 끌고 나와야 함
- 라) 물을 많이 마셔 구토할 때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 마) 응급처치 후 학생이 회복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

2) 저체온증

- 가) 환자를 추운 곳으로부터 빨리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함
- 나) 젖은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머리를 말려 줌
- 다) 의식이 정상이면, 옷과 이불 등을 덮어주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도록 함
- 라) 의식이 없다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

3) 동상

- 가) 환자를 추운 곳으로부터 빨리 따뜻한 곳으로 옮김
- 나)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는 반지, 옷, 벨트 등을 제거
- 다) 동상 부위를 절대 문지르거나 마사지하지 않으며, 뜨거운 물이나 난방기구 등에 화상 부위를 직접 대지 않도록 함
- 라) 동상 부위가 서로 닿거나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병원으로 이송
- 마) 병원까지 이동이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동상부위를 따뜻한 물에(38~42°C)에 피부를 담그도록 함

4) 의식이 없는 경우: 개정 심폐소생술 실시와 자동제세동기(AED)사용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가.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 | | |
|-----------------|---|
| 1단계 : 의식 확인 | 어깨를 두드리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여보세요. 눈 떠 보세요." 등에 반응이 없다면 의식 없음으로 판단한다. |
| 2단계 : 119에 구조요청 | 주변인 중 특정 1인을 지목하여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
| 3단계 : 가슴(흉부)압박 | 양쪽 유두선과 흉골의 교차 지점에 한쪽 손바닥을 올려놓고, 다른 손을 겹쳐 깍지를 낀다. 팔꿈치는 곧게 펴고, 5-6cm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분당 100회의 속도) 30회 압박한다. |
| 4단계 : 기도유지 | 한 손은 턱, 다른 한손은 이마에 두고, 턱은 들고 이마를 가볍게 눌려, 고개가 뒤로 젖혀지도록 한다. |
| 5단계 : 인공호흡 | 한 손으로 코를 막고, 구조자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후 1초에 2회 공기를 불어 넣는다. |

★ 1~3단계까지를 「가슴압박 소생술(hands only CPR)」이라고 하고, 이때는 가슴압박을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행한다.

나.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사용법

- ① 자동제세동기의 전원을 켜고, 음성안내에 따른다.
- ② 환자의 상체를 노출시킨 후 전극패드를 오른쪽 쇄골아래와 왼쪽 유두아래 겨드랑이선에 부착한다.
- ③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심장 리듬 분석을 기다린다.
- ④ 환자로부터 떨어져 안내에 따라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 ⑤ 제세동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그림출처: www.1339.or.kr]



구급상자 정리요령(예시)

*구성 : 붕대와 반창고, 거즈, 일회용 밴드와 외상 연고, 소독약, 스프레이 파스, 가위, 핀셋, 면봉, 기본 의약품

*기본 의약품 : 소화제, 정장제, 감기약, 진통제, 여성용품, 모기약, 멀미약



참고서식



CONTENTS

[서식 1]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	150
[서식 2]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답사 Check list	151
[서식 3]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답사 결과 집계표(예시)	153
[서식 4] 수학여행·수련활동(학생·교직원) 평가 설문지	154
[서식 5] 학생 현장체험학습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감지 등) 요청서	158
[서식 6] 학생 현장체험학습 차량 보호 표지(예시)	159
[서식 7]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60
[서식 8] 수학여행·수련활동 관련 사안보고서	161
[서식 9]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62
[서식 10] 청렴 안내문	163
[서식 11] 수학여행 신고서(중규모)	164
[서식 12] 수학여행 컨설팅 신청서(대규모)	165
[서식 13]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서	166
[서식 14] 숙박시설 소방점검 요청서	167

서식1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

구분	점검 항목	확인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상황시 대처 방안을 확보하였는가?② 비상 연락망, 비상 상황 대처 방안, 비상조치 매뉴얼 등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는가?③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체계(비상조치 시스템, 비상 연락망 등)에 대해 서비스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교육여부)④ 수학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여행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였는가?⑤ 운송 수단과 숙박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점검, 검사, 측정 등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가?	
긴급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차량이동 중 일반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② 식중독·도난 및 분실물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③ 숙박시설 등의 각종 시설을 내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④ 그 외의 발생 가능한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출발지 관광버스 탑승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관광버스에 수학여행 차량 안내 표지 및 해당계약건별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였는가?② 전체 좌석의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조작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③ 차량에서 기름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였는가?④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띠 착용 등 버스 내 안전 수칙을 설명하였는가?(운전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차소화기 등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을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이용하여 안내방송을 해야 함)⑤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여행지 이동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운행 중 좌석을 이탈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는가?② 운행 중 음주가무를 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는가?③ 여행 휴게소 정차에 대하여 공지하였는가?④ 여행 휴게소 정차, 운전자 연속 운전 시간제한 및 휴게 시간을 준수하였는가?⑤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규정된 운행속도를 준수하도록 안내 하였는가?	
역·여객선 터미널·공항 도착 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여행업자의 로고나 업체명이 표기된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안내판을 이용하여 쉽게 여행 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② 운송편, 탑승 시간, 탑승구, 출발 시간, 소요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 하였는가?	
역·여객선 터미널·공항 도착 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객실 배정표를 이용하여 출발 인원을 확인하였는가?② 탑승권 발급 후 탑승구와 탑승 시간을 설명하였는가?③ 탑승구로 안내하여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서식2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답사 Check list

1) 건물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음향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2) 내부시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원활하게 배치 가능한가?	
②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가스레인지, 세면대 등)	
④ 숙소 내부에 선정적인 포스터나 유인물이 부착되어 있는가?	
⑤ 외부의 소음이 잘 차단되는가?	
⑥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3) 안전

점검 항목	확인
① 학교에서 소방서에 숙박시설 화재점검을 요청하였는가?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③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④ 곳곳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못 등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가?	
⑤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⑥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⑦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자레인지 등)가 가능한가?	
⑧ 소화기 및 완강기는 구비되어 있는가?	

4) 생활지도

점검 항목	확인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는가?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③ 일반객실과 학생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④ 일정 종료 후 학생들의 드나듦을 파악할 시스템이 갖추어졌는가?	
⑤ 숙소 내에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5) 위생

점검 항목	확인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하고 식단 내용이 충실히 있는가?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⑤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6) 식당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선호에 적합한가?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인가?	

7)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③ 자연보호 등의 자체 교육적 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⑤ 쇼핑이나 단순한 놀이 등의 장소에 학생들이 방지되지는 않는가?	
⑥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의거한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인가?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 활동이 포함 된 경우)	

서식3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답사 결과 집계표(예시)

답사자 :

구분	속 소 명 관점 (5점 리커트 척도)	A	B	C	D	비교 분석 결과
객실	정식 허가업체인가?					
	2교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경우 대비는 충분한가?					
	계단 등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객실 내 환경이 청결한가?					
	화장실 사용은 용이한가?					
식당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가?					
	배식이 알맞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균형적인 식단으로 제공되는가?					
	위생점검 수검사항은 통과되었는가?					
강당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가?					
	강당 이외의 교육시설이 있는가?					
교육	지도 교관들은 자격을 갖추고있는가?					
	지도 교관들은 상설 근무하고있는가?					
기타	전기, 가스 시설은 안전한가?					
	시설이나 안전에 위험요소는 없는가?					
	오락실 등 유해환경시설은 없는가?					
계						
장·단점 비교	장점			순위		심사결과
	단점			- - -		

서식4 수학여행 평가 설문지(참가 학생용 예시)

영역 구분	내 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5)	(4)	(3)	(2)	(1)
숙소	1) 숙소의 침구류와 화장실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었는가?					
	2) 숙소 배정 시 한방의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는가?					
	3) 숙소의 냉방(난방)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가?					
	4) 학생들이 숙박하기에 안전한가?					
	5) 후배들에게 이 숙소를 이용하도록 추천하고 싶은가?					
프로그램	6) 활동한 프로그램 내용이 흥미롭고 교육적이었는가?					
	7) 프로그램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가?					
	8) 이동시간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되었는가?					
	9) 체험프로그램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되어 진행되었는가?					
	10) 지도강사 (문화해설사, 인솔자 등)는 바른말을 사용하며 친절하게 지도하였는가?					
교통	11) 운전기사는 친절한 태도로 대하였는가?					
	12) 운전기사는 안전하게 운행하였는가? (과속난폭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무리지어 운전 금지)					
	13) 차량은 청결하며, 적정 온도를 유지하였는가?					
	14) 안전벨트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5) 이용한 교통수단은 만족스러운가? (기차, 버스, 선박 등)					
영양 식사	16) 식사의 양은 충분하였으며, 맛있었는가?					
	17) 식당은 청결하였는가?					
	18) 식사(밥, 반찬)은 맛있고 청결하게 요리되었는가?					
	19) 조리종사원은 친절했는가?					
	20) 이용한 식당을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					
합계 (5점 척도)						
만족도(%)						

서식4 수학여행 평가 설문지(인솔자용 예시)

영역 구분	내 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5)	(4)	(3)	(2)	(1)
숙소	1) 숙소의 침구류와 화장실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었는가?					
	2) 숙소 배정 시 한방의 인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는가?					
	3) 숙소의 냉방(난방)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가?					
	4) 학생들이 숙박하기에 안전한가?					
	5) 이 숙소를 다음 해에도 이용하도록 추천하고 싶은가?					
프로그램	6) 활동한 프로그램 내용이 흥미롭고 교육적이었는가?					
	7) 프로그램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가?					
	8) 이동시간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되었는가?					
	9) 체험프로그램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되어 진행되었는가?					
	10) 지도강사 (문화해설사, 인솔자 등)는 바른말을 사용하며 친절하게 지도하였는가?					
교통	11) 운전기사는 친절한 태도로 대하였는가?					
	12) 운전기사는 안전하게 운행하였는가? (과속난폭운전, 음주운전, 출음운전, 무리지어 운전 금지)					
	13) 차량은 청결하며, 적정 온도를 유지하였는가?					
	14) 안전벨트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15) 이용한 교통수단은 만족스러운가? (기차, 버스, 선박 등)					
영양 식사	16) 식사의 양은 충분하였으며, 맛있었는가?					
	17) 식당은 청결하였는가?					
	18) 식사(밥, 반찬)는 맛있고 청결하게 요리되었는가?					
	19) 조리종사원은 친절했는가?					
	20) 이용한 식당을 다음 해에도 추천하고 싶은가 ?					
합계 (5점 척도)						
만족도(%)						

서식4 수련활동 평가 설문지(참가 학생용 예시)

구분	내 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5)	(4)	(3)	(2)	(1)
시설 · 환경	1) 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2) 환기, 채광, 조명, 방습, 방음 시설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3) 화장실과 세면장 등은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까?					
	4) 내년에도 본 시설을 이용하고 싶습니까?					
숙소	5) 숙소의 청결상태에 대하여 만족합니까?					
	6) 방배정은 적당한 인원이 배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7) 베개 및 이불은 청결하고 잘 구비되어 있습니까?					
	8) 숙소의 냉방(난방)은 적당하였습니까?					
프로그램 · 내용	9) 활동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만족합니까?					
	10) 프로그램은 교육과 놀이, 휴식 등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습니까?					
	11) 편성인원과 수준에 따른 나이도는 적당 하다고 생각합니까?					
안전 · 영양	12) 활동 전 안전에 대한 예방 교육은 받았습니까?					
	13) 식사의 양은 충분하고 영양을 생각하여 제공되었습니까?					
	14) 식당은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까?					
교통	15) 운행기사는 친절하였습니까?					
	16) 교통신호와 급정거 금지 등 법규는 잘 지켰나요?					
	17) 안전벨트는 부착되어 있습니까?					
강사	18) 강사는 바른 말을 사용하며 친절 하였습니까?					
	19) 강사들로부터 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기타	20) 활동내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합계 (5점 척도)						
만족도 (%)						

서식4 수련활동 평가 설문지(인솔자용 예시)

구분	내 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5)	(4)	(3)	(2)	(1)
시설 · 환경	1)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장소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전달체계 및 방송시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4) 다음에도 이 장소를 이용 하시겠습니까?					
교육의 필요성	5)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6) 교육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학생들의 인격수양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 내용	8) 활동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9) 프로그램은 교육과 놀이, 휴식 등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습니까?					
	10)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위해 교육목표에 따라 계획성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11) 편성 안원과 수준에 따른 난이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 · 영양	12)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대비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안전에 필요한 장비와 지원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14) 식당의 규모는 충분하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교통	15) 교통신호와 급정거 금지 등 법규는 잘 지켰나요?					
	16) 안전벨트는 부착되어 있습니까?					
	17) 버스 안전 운행을 실천하였나요?					
강사	18) 강사의 성실성 및 친절도는 어떠하였습니까?					
	19) 강사들은 학생 통솔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적당한 인원이 배정되었습니까?					
	20) 강사들은 진행과정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하였습니까?					
합계 (5점 척도)						
만족도 (%)						

서식5

학생 현장체험학습 수송버스 호송 협조(음주측정 등) 요청서

○○학교장(직인)

※ 작성된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연번	항목	실시내용			
1	기 간	201 년 0월 0일 ~ 0월 0일 [0박 0일]			
2	장 소	목적지 : ○○○ 주 소 : ○○도 ○○시 ○○구 ○○로			
3	대 상	총 000명 (학생 000명, 인솔자 00명), 버스 00대			
4	학 교 명 (관할경찰서)	○○학교 (○○경찰서)			
	학교주소 및 연락처	○○시 ○○구 ○○동 (☎ 000-000-0000)			
5	인천구간	(예시) 인천시청→인천터미널→남동IC 【시계, 5km】			
6	대표인솔자	성명 : ○○○ (휴대전화 000-000-0000)			
7	활동내역 및 이동코스				
실시일	출발시간	출발지	이동코스	도착시간	비고
1일	08:00	○○학교	□□IC→서해안고속도로→ ○○IC→목적지	16:00	학교앞 교통정리, 운전자 안전교육, 음주측정 등 요청
2일			차량 이동 없음		
3일	13:00	○○○	역코스	15:30	

위와 같이 요청하오니 음주감지 및 가능한 범위에서 에스코트를 요청합니다.

201 년 월 일

○○경찰서장 귀하

※ 참고사항

- 교통안전(음주 감지)협조 요청은 관한 경찰서와 가능 여부 사전 협의
- 행사 1주일 전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협조 요청
- 1일형 현장체험학습 음주 감지는 학교 자체 실시 권장

서식6

학생 현장체험학습 차량 보호 표지(예시)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364mm)

나. 양식

수학여행수련활동(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364mm)

나. 양식 :

수학여행수련활동(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서식7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

점검(교육)자	회사명	성명	학교명	성명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뜻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서식8

수학여행·수련활동 관련 사안보고서

- 학교명 : ○○○학교(학교장명)
 발생일시 : 201 년○월○일 ○○:○○
 기본사항

보고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참여학년, 학생수 및 장소 등)					
사안명		사고 발생지		유선 보고일시	
피해현황 (교사 및 학생)					

※ 발생 즉시 유선보고 후 수학여행·수련활동 사안보고서 송부

- 사안 개요

▷ 사안 내용 (6하 원칙에 의해 기술)
▷ 언론보도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 경찰 조사 내용 (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

※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사안 발생 시 보고 순서

- 초·중학교 : 학교 → 교육지원청 → 본청 안전총괄과
- 고등학교 : 학교 → 본청 안전총괄과

※ 국립학교 : 본청 안전총괄과, 교육부

※ 발생 즉시 유선 보고 → 사안보고서 송부

○ 계약명 : ○○학교 ○학년 수학여행 숙박용역

- 계약금액 :

- 계약보증금 :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당사무소는 귀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계약보증금]**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에 귀속시켜 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

계약상대자 : ○○○○업체, 대표 ○○○(인)

인천○○학교장 귀하

귀하

『함께하는 청렴 인천교육』,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학교 교직원은 「청렴 인천교육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 직무관련 민원인 등으로부터 일체의 금품·향응·선물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 모든 업무처리 절차는 명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불만 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업무와 관련된 기한을 준수하며 설명을 충분히 하는 등 법규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인천○○학교에서는 교육이 어느 분야보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패척결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귀하께서도 투명한 공직사회가 정착되고 청렴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학교장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 또는 암시가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전화 032-420-8155) 또는 학교생활교육과(전화 032-420-8400)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1 수학여행 신고서(중규모)

학교명	○○학교		학교장	○○○
담당자	○○○		연락처	○○○-○○○○
수학여행 기간	201 년 ○○월 ○○일 ~ ○○월 ○○일			
장소(목적지)	○○ 일원			
참석인원	총 ○○○명(교사 ○○명, 학생 ○○○명)			
여행경로(코스)	1일차	인천→○○→○○→○○→○○→○○→○○→○○→○○		
	2일차			
	3일차			
이동방법	버스 ○○대, 선박○○대, 비행기 ○○대			
사전답사여부	(1회, 2회)		활성화위원회 실시여부	○, X
프로그램 인증 해당여부	○, X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여부	○, X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 X		안전요원 확보여부	명
안심서비스 실시여부	○, X		소방점검 실시여부	○, X
계약방법	(계약방법 : 1인수의, 2인수의, 일반입찰, 2단계입찰, MAS 등) 예) 숙박 : 1인수의 교통 : 소액수의 기타 : 2단계입찰(전체위탁)			

붙임 수학여행 계획서

위와 같이 수학여행을 실시하기에 신고합니다.

201 . . .

인천○○학교장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해당)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초등학교, 중학교 해당)

서식12 수학여행 컨설팅 신청서(대규모)

학교명	○○학교		학교장	○○○
담당자	○○○		연락처	○○○-○○○○
수학여행기간	201 년 ○○월 ○○일 ~ ○○월 ○○일			
장소(목적지)	○○ 일원			
참석인원	총 ○○○명(교사 ○○명, 학생 ○○○명)			
여행경로(코스)	1일차	인천→○○→○○→○○→○○→○○→○○→○○→○○		
	2일차			
	3일차			
이동방법	버스 ○○대, 선박○○대, 비행기 ○○대			
사전답사여부	(1회, 2회)		활성화위원회 실시여부	○, X
프로그램 인증 해당여부	○, X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여부	○, X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 X		안전요원 확보여부	명
안심서비스 실시여부	○, X		소방점검 실시여부	○, X
계약방법	(계약방법 : 1인수의, 소액수의, 일반입찰, 2단계입찰, MAS 등) 예) 숙박 : 1인수의 교통 : 소액수의 기타 : 2단계입찰(전체위탁)			

붙임 수학여행 계획서

위와 같이 수학여행을 실시하기에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1 . . .

인천○○학교장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해당)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초등학교, 중학교 해당)

서식13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서

신청학교	(학교명) ○○고등학교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길 ○○(○○동)			
	업무담당자		연락처	032-451-5000(사) 010-0000-4000(핸)
	(여행일정) ○ 수학여행기간 : 201 .00. 00.(0) ~ 00. 00.(0) ○ 제주 도착시간 / 장소 : 00:00 / 제주공항 ○ 방문인원 : 총 00명【인솔 00명, 학생 00명(0학년)】 ※ <u>피난약자</u> : 장애유형(시각, 지체 등), 0명(0학년)			
	1. (숙박시설) ○○○리조트 - 연락처 :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로 ○○(○○동) 2. (음식점) ○○리조트 내 식당 - 연락처 :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로 ○○(○○동) 3. (음식점) ○○식당 - 연락처 :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로 ○○(○○동) 4. (체험시설) ○○유원시설 - 연락처 :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로 ○○(○○동)			
점검요청 시 설	시설물 안전점검 후 지적사항 보완 일정 등을 감안하여 <u>수학여행 방문 50일전에 신청</u>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신청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인 천 ○ ○ 학 교 장				

서식14 숙박시설 소방점검 요청서

○○학교장

학교명	○○학교	
행사명	수련활동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대상학년	6	
학생수	93	
행사일(1일차)	2019. 0. 00.	
행사일(1일차) 숙박장소	숙소명(동 포함)	○○콘도
	주소	○○도 ○○시 ○○길 000
행사일(2일차)	2019. 0. 00.	
행사일(2일차) 숙박장소	숙소명(동 포함)	□□콘도
	주소	□□도 □□시 □□길 000

행사 진행 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위와 같이 소방점검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소방서장 귀하

참
고
서
식

◎ 검토위원 ◎

- | | |
|----------------|-------------|
| ◇ 인천부흥고등학교 | 교 감 김 경 선 |
| ◇ 인천영선고등학교 | 행정실장 전 윤 주 |
| ◇ 인천상정고등학교 | 교 사 김 소 미 |
| ◇ 인성여자고등학교 | 교 사 장 현 덕 |
| ◇ 인천석남중학교 | 교 사 하 미 현 |
| ◇ 인천영선초등학교 | 교 사 김 영 진 |
| ◇ 인천소양초등학교 | 교 사 설 승 민 |
| ◇ 인천시교육청 교육재정과 | 주 무 관 김 영 수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운영 매뉴얼

발간등록번호 : 인천교육 2021-0019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발행일 : 2021년 1월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총괄과
